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TENTS

| | | |
|-----------|--------------------------------------|-----------|
| I | 개 괄 | 1 |
| | 1. 제도 개요 | 3 |
| | 2. 연 혁 | 4 |
| | 3. 운용방향 | 11 |
| II | 지방재정 투자심사 | 13 |
| | 1. 심사 대상 | 16 |
| | 1) 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 16 |
| | 2)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 17 |
| | 2. 심사 제외대상 | 21 |
| | 1)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사 제외(당연면제) | 21 |
| |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심사 제외(당연면제) | 22 |
| | 3) 협의에 의한 심사 제외(협의면제) | 30 |
| | 3. 심사기관의 구분 | 31 |
| | 1) 시·도 투자사업 | 31 |
| | 2) 시·군·구 투자사업 | 32 |
| | 4. 총사업비의 산정 | 33 |
| | 1) 총사업비 일반 | 34 |
| | 2)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산정 | 34 |
| |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 35 |
| | 5. 투자심사 기준 | 37 |

| | |
|-------------------------|-----------|
| 6. 투자심사 절차 | 42 |
| 1)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43 |
| 2) 심사의 사전절차 | 44 |
| 3) 심사의 사후절차 | 46 |
| 4) 심사 시기 | 47 |
| 5) 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 47 |
| 6) 심사 이행절차 | 48 |
| 7. 재심사 | 53 |
| 1) 개념 | 53 |
| 2) 대상 | 53 |
| 3) 의뢰 시기 | 56 |
| 4) 제외 대상 | 56 |
| 5) 재심사 기관 | 56 |
| 8. 2단계 심사 | 57 |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59

| | |
|------------------------------|-----------|
| 1. 투자심사 사후평가 | 61 |
| 2. 투자심사 이력관리 개요 | 63 |
| 3. 투자심사 이력관리 절차 | 64 |
| 1) DB 구축 단계 | 65 |
| 2) 사업 검토 단계 | 66 |
| 3) 사업 관리 단계 | 67 |
| 4. 이력관리 전문기관 | 69 |

Ⅳ 타당성조사 71

| | |
|---------------------------------|-----------|
| 1. 타당성조사 개요 | 73 |
| 2. 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 73 |

CONTENTS

| | |
|--------------------------|----|
|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75 |
| 4. 타당성조사 절차 | 76 |
| 1) 조사 의뢰 | 77 |
| 2) 조사 과제선정 등 | 78 |
| 3) 조사 약정 | 79 |
| 4) 비용 산정기준 | 80 |
| 5) 연구진 선정 | 81 |
| 6) 중간·최종보고 및 결과 통보 | 82 |
| 7) 조사 결과의 활용 | 82 |
| 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83 |
| 1) 기본방향 | 83 |
| 2) 주요내용 | 83 |
| 6. 타당성 재조사 | 85 |

V 관련 서식 **87**

| | |
|-----------------------------|-----|
| 붙임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 89 |
| 붙임2.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 | 124 |
| 붙임3.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서식 | 125 |
| 붙임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 128 |
| 붙임5.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 137 |
| 붙임6. 투자심사 면제 요구서 서식 | 146 |

VI 관련 법령 **159**

I

개괄

1. 제도 개요
2. 연혁
3. 운용방향



1 제도개요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92~)

■ 주 체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

* (시·군·구) 20~60억원 자체심사, 60~200억원 시·도의뢰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시·도) 40~300억원 자체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대 상

※ 「지방재정법」 제37조

-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심사기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절 차

-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



3 연 혁

■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94. 12. 22. 조문신설)

- 지자체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95. 5. 16. 개정)

-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01. 9. 15. 개정)

-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1. 4. 6. 개정)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시·군·구 심사,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도 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심사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02. 11. 29. 개정)

- 1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2개 이상의 시·도 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05. 12. 30. 전부개정)

-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심사 대상 확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의뢰 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임의사항
-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6. 3. 14. 개정)

- 시·군·구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
- 50억원~10억원 시·도의뢰심사, 1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하반기 투자심사 일정 조정 등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8. 8. 14. 개정)

- 총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기관 조정
 -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300억원 자체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 (행사성사업) 10억원~30억원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10억원~50억원 자체심사, 50억원~300억원 시·도의뢰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 (행사성사업) 5억원~10억원 자체심사, 10억원~30억원 시·도의뢰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9. 2. 9. 개정)

-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 심사 의무화(시·군·구→시·도, 시·도→중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09. 11. 2. 개정)

- 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심사 완화)
 -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10. 12. 20. 개정)

-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금액 하향 조정(심사 강화)
 - 시·도: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시·군·구: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생략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10. 12. 31. 개정)

-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
 - 시·도: 10억원~30억원 → 5억원~30억원
 - 시·군·구: 5억원~10억원 → 3억원~5억원
- 정기심사 횟수 조정: 연 2회 → 연 3회
- 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11. 3. 8 조문신설, '12. 1. 1. 시행)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 불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11. 9. 6. 개정 및 조문신설)

-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범위 확대(심사 강화)
 - 시·도: 4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시·군·구: 2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12. 1. 1. 시행)
 - 시·도: 40억원 이상
 - 시·군·구: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11. 9. 29. 개정)

-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도: 5억원~30억원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3억원~5억원 자체심사, 5억원~30억원 시·도의뢰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안전행정부령, '13. 6. 5. 개정)

- 의뢰심사 기준금액 조정(심사 강화)
 - 시·도: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50억원~300억원 시·도의뢰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40억원~100억원 시·도의뢰심사, 1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심사 강화)
 - 지방자치단체 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 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심사 강화)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 및 조문신설, ’14. 11. 29. 시행)

- 용어 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제37조제2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방법 규정(제37조의2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 포함 의무화(제33조제3항제9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14. 11. 28. 개정, ’14. 11. 29. 시행)

-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심사 기준 상향(심사 완화)
 - 시·도: 1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5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정기심사 횟수 조정: 연 3회 → 연 4회
-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함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20/100 + 150억원$$

-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 타당성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제외대상 등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심사 완화)
 - 4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포함
-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 타당성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 3. 30 개정·시행)

- 투자심사 반려 근거 명확화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 6. 30 개정·시행)

-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심사 강화)
 - 시·도: 5억원~30억원 → 3억원~30억원
 - 시·군·구: 3억원~5억원 → 1억원~3억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7. 12. 29. 개정·시행)

-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심사 완화)
 - 시·도: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40억원~100억원 시·도의뢰심사, 1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60억원~200억원 시·도의뢰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정기심사 횟수 조정: 연 4회 → 연 3회(수시심사 유지)
- 투자심사 「일자리창출」 항목 신설
 -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 타당성조사 의뢰 횟수 조정: 연 4회 → 연 3회(수시조사 유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9. 5. 17. 개정·시행)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 11. 1. 개정·시행)

- 정기심사 횟수 조정: 연 3회(3월, 6월, 10월)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 타당성조사 횟수 조정: 연 3회(3월, 6월, 10월) →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가 등

□ 「지방재정법」('23. 4. 11. 개정, '24. 1. 12. 시행)

- 투자심사 제외 대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근거조문을 하위법령 으로부터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24. 1. 9. 개정, '24. 1. 12. 시행)

- 투자심사 유형·규모별 심사 실시주체, 투자심사 제외 대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의 근거 조문을 시행규칙 등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4. 3. 11. 개정·시행)

- 정기심사 횟수 조정: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 연 3회(3월, 6월, 9월)
※ 지방예산 편성 일정 고려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 위원 수 확대(21명 → 30명), 보증채무 및 예산 외 의무부담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체계화
 -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 제출, 전문기관 검토 의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근거 마련

3

운용방향

■ 투자심사의 실효성·전문성 제고

- 경제 불확실성 증가, 지방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 운용**
- 단순 사전절차가 아닌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등 **현지 조사**를 적극 실시

■ 객관적 방법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 대규모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
- 지자체별 예산·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해 **투자심사 제도, 총사업비 산정 및 수요 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
- 투자심사 의뢰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보완

■ 투자심사 이후 면밀한 사업관리

- 지자체별 심사한 사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 지자체별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등 각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한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

II

지방재정 투자심사

1. 심사 대상
 - 1) 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 2)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심사 제외대상
 - 1)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사 제외(당연면제)
 -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심사 제외(당연면제)
 - 3) 협약에 의한 심사 제외(협약면제)
3. 심사기관의 구분
 - 1) 시·도 투자사업
 - 2) 시·군·구 투자사업
4. 총사업비의 산정
 - 1) 총사업비 일반
 - 2)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산정
 -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5. 투자심사 기준
6. 투자심사 절차
 - 1)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2) 심사의 사전절차
 - 3) 심사 의뢰시점
 - 4) 심사 시기
 - 5) 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 6) 심사 이행절차
7. 재심사
 - 1) 개 념
 - 2) 대 상
 - 3) 제외 대상
 - 4) 재심사 기관
8. 2단계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 〉

| 구분 | 사업유형 | | 심사 기관 | | |
|------------------------------|------------------------------|----------------|----------------|--------------------|-----------------------|
| | | | 자체심사 | 의뢰심사 | |
| | | | | 시·도 (시·군·구→시·도) | 중앙 (시·도/시·군·구→행안부) |
| 광역 자치 단체 (시·도) | 일반 투자 사업 | 전액 자체 재원 | 40억원 이상 | X | - |
| | | 이전 재원 포함 | 40 ~ 300억원 | | 300억원 이상 |
| | 행사성 사업 | | 3 ~ 30억원 | | 30억원 이상 |
| | 홍보관 사업 | | 5 ~ 30억원 | | 30억원 이상 |
| | 청사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 | - | | 40억원 이상 |
| |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 | | | |
| | 기초 자치 단체 (시·군·구) | 일반 투자 사업 | 전액 자체 재원 | | 20억원 이상 |
| 이전 재원 포함 | | | 20 ~ 60억원 | 60 ~ 200억원 | 200억원 이상 |
| 행사성 사업 | | 1 ~ 3억원 | 3 ~ 30억원 | 30억원 이상 | |
| 홍보관 사업 | | 3 ~ 5억원 | 5 ~ 30억원 | | |
| 청사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 | - | 20억원 이상 | - | |
|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 | | | | |

1 심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1 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 시기적 범위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투자사업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포함
 -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규모적 범위

- (시·도)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내용적 범위

- 부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국가·민간·외국자본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민간 등 다른 주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

-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단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하나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 내역사업을 각각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인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이더라도 ①각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의 시설물 간 상호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있고 ②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봄
 - * 사업구간별로 사업계획을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일 부지 내 세부·내역사업별 국비의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는 투자심사의 대상인 단일사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투자성 사업으로서 후술하는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투자사업을 의미
-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업 시행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방재정이 투자사업에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자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 등을 말함
 - **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 일반투자사업의 범위 〉

- ①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변경 등을 포함하는 일체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 ②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지방재정 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사업 등)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포함하지 않음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홍보관 사업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인물·사건 등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전시시설)은 문화·체육시설로 봄
 - ※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조형시설(조각·공예 등) 등 공공조형물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복합시설물인 경우, 홍보관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하여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공연·축제·문화행사** 등 행사성 사업

〈 행사성 사업의 범위 〉

- ①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 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체육대회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⑨ 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

-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하지 않음**
 - ※ (예) 올림픽,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 행사 개최를 위해 **영구시설물(예: 경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은 행사성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서 심사 이행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
 - **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 (예)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은 청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 (예) 관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
- **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

■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
 - ** 기존 문화·체육시설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 사업으로 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다목의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복합시설물인 경우**, 문화·체육시설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은 투자심사 대상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행위를 의미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로서,
 - 미분양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 **확약**(소위 책임분양), **비용부담 협약** 등과 같이 **향후**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확약·협약**을 의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으로서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2 심사 제외대상

1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사 제외 (당연면제)

※ 법 제37조제3항 각 호

-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3.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본다.

-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 다만, 복합시설은 투자심사 대상임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요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상 소방기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등(소방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심사 제외 (당연면제)

※ 시행령 별표 제1호~제25호

- 1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방조제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자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방조제 관리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③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浚渫)·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3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도 투자심사 제외

- 5「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 6「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제1항(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재정지출, 현물출자,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고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6호)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도 제외 가능

-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받기반정리 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 1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 16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 도로**의 건설 사업

- 17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 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地)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 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²⁰「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²¹「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2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3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25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공유재산 가격, 용역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3 협의에 의한 심사 제외 (협의면제)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 개요

- (대상) ①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②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면제 기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성,
 ▲지방재정 영향*, ▲우발채무 등 재무성, ▲지역주민 수용성 등
 * 재정여건 및 재정자립도·자주도 분석, 자원조달 가능성 검토

■ 절차

- (접수)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예: 상·하반기, 연 2회)
 ※ 다만, 국가정책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협의 실시
- (전문기관 검토)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투자심사 면제의 적정성을 검토
 * 부동산 PF·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사업,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총사업비 및 운영비·사업수익성 등 재무모델의 적정성, 우발채무 부담 규모의 적정성 등 재무성 중심으로 검토(약 2개월 소요)
- (면제 결정) 행정안전부는 실무검토 및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 후 통보

〈 중앙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

| | |
|-----------------------------|------------------|
| 투자심사 협의면제 신청 | 부처 또는 지자체 → 행안부 |
| 신청서 검토 및 사전검토 대상사업 선정 | 행안부 |
| 협의면제 사전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 사전검토 결과 회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행안부 |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 | 행안부 |
| 협의면제 결과 통보 | 행안부 → 부처 또는 지자체 |

3 심사기관의 구분

1 시·도 투자사업

■ 자체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일반투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투자심사 제도에서 '자체재원'의 개념 〉

- 자체재원에는 ①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② 상급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③ 조정교부금(보통·특별),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하는 경우 제외)이 포함
- 지방채는 자체재원에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용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기금은 지방채로 봄
- 재원 부담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체재원으로 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중앙의뢰심사 (행정안전부)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일반투자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 ※ 이전재원이 포함된 청사 및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2 시·군·구 투자사업

■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일반투자사업)
 -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도 의뢰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일반투자사업)
 -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 ※ 이전재원이 포함된 청사 및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중앙의뢰심사 (행정안전부)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일반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충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 투자사업 시행주체의 판단 〉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사업: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비 보조사업: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시행주체
 - 원칙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의 지자체로 선정
 - 투자심사 의뢰 주체에 따라 심사기관이 상이한 경우, 심사기관 중 상급기관으로 심사 의뢰
 - 심사를 의뢰한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지자체에 공문 통보 조치

4 총사업비의 산정

〈 총사업비 항목별 내용(예시) 〉

| 항목 | 내용 | | |
|----------------|--|--------------------------------|--|
| 공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 녹색건축공사비 + 신재생에너지설비 + 철거공사비 ※ (참조)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및 나라장터 유사사례 공사비 | | |
| 보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 (참조) ① 감정평가액 ②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동일 지목의 실거래가, 유사사례, 관련규정 (지목, 지번, 소유자(국유지, 공유지, 기타공유지) 구분, 면적과 지장물 리스트) ③ 공시지가 지목별 해당 배율(용도지역, 이용상황) | | |
| 시설 부대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 (참조) 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한 대가요율 ②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 및 전면책임감리 ※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중 전면책임감리 요율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요율 적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대비 ※ (참조) 타당성조사 지침, 착수회의 자료, 예산편성지침, 각 개별법 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측량비(1%) ※ 시설부대경비의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가 예상되는 경비 (조사 및 측량비, 각종 인증 용역비 및 수수료, 미술장식품 설치비 등) 추가 반영 | | |
| 운영 설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장비 및 설비비 ※ (예)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장서구입비, 수장품 구입비, 무대·조명·음향장비 설치비 등 | | |
| | 〈 시설유형별 운영설비비 추가 비용 항목(예시) 〉 | |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의료시설 | 의료장비비 | 병원등급, 진료과목, 병상수, 유사사례 등을 참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 | | 시스템구축비 | 신축, 증축에 따른 차이와 H/W, S/W에 대한 구분 필요 |
| | 공연시설 | 무대장비비 |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비 등 |
| | 전시시설 | 전시공사비 | 전시체험 장비비 포함 |
| 초기 전시품 구입비 | | 개관 시 필요한 유물, 미술품 등 | |
| 도서관 시설 | 정보시스템공사비 | 멀티미디어 자료제공, 도서관리 서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 | 초기 장서구입비 | 정기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 포함 | |
| 예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의 10% ※ 다만,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경우 보상비 항목에는 공시지가를 포함하되, 예비비 산정 시에는 제외 | | |

※ 총사업비 항목별 산정기준은 투자심사 의뢰 직전년도 말(또는 그 이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그 이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시점과 사유를 함께 제시

1 총사업비 일반

- 총사업비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하며,
 - ①공사비(낙찰차액 미적용), ②보상비, ③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④운영설비비(장비구축·구입비 등), ⑤제세공과금, ⑥예비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 지방채 등 용자사업비, 기 지출된 비용도 포함
- 예비비는 투자심사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량 변동 등 사업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모든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
 - ※ 단,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제외 가능
- 계속추진 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총사업비로 봄

2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산정

■ 일반투자사업

- (건설사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 단, 동 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
-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의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

■ 홍보관 사업

-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 경비, 예비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부지 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

■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외에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전 구입이 필요한 물품 등 개관준비금,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 채무부담, 보증채무부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되,
 - 지자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금액 및 관련 협약서(주주협약서, 대출약정서 등) 등을 의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5. 심의자료 - 바.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등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 지자체는 부지(공유재산)만 제공하는 사업

-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민간 등 다른 주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부지(공유재산)를 국가·민간 등과 등가교환하는 경우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 미포함

※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

■ 지자체가 부지(공유재산)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 지자체 공유재산인 부지의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

*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으로 함)

○ 단, 이는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부지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

※ (예) ①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②청사 부지 내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등

- 지하에 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부지는 다시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지상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 하천·호수 등 공유수면 위의 수상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 지자체가 부지 매입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 부지 보상비(보상배율 적용가 또는 감정가)를 총사업비에 포함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 여부 등
- (타당성) 사업의 성격 및 예상 수요,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규모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주민숙원·수해도 등 사업계획 타당성
 - 주요 현황 및 수요 추세 등 사업의 성격 및 예상 수요
 - 총사업비 산정 시 비용 산정 기준시점 및 항목별* 산정근거의 적절성
 -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
 -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규모 및 수요, 유사 또는 동일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와 운영비용의 적정성 검토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기존 시설과의 용도 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재정지출에 따른 직·간접 고용효과
 - 기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여부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중앙관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경우 지방재정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와 가능 여부 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계획*과의 연계성

*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조), 지역종합개발계획(「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촉진법」제38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 등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등
 - ※ (예)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앙관서와 사전 협의 여부 등
- 추계된 비용(연차별 자원부담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 (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의 가능성 등
- 민간자본 확약서 등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해당 재정투자사업 자체의 재무성
 -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검토
-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
 - 비용이 과소 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참조

〈 참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

| 평가 지표 | 비 고 |
|--|--|
| ※ 심사하지 않고 반려 | |
| ①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이행했는지 여부 - 타당성조사 결과의 반영 여부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제시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조달계획 미흡(국·도비 미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국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다만, ①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 ③정부예산안에 지원 대상 지자체가 명시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 전에 투자심사 의뢰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반려사유 미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반려 통보를 받고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2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자료의 누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및 산출근거 미제시 - 부지비 등 주요한 사업비 항목을 총사업비에서 누락 - 가용재원 판단서 미제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재무성 분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4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쟁송 진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5호 |
| ② 사업의 성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지 여부 ★ •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 ★ <p>※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제32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지자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로서 구체적인 지방재정 부담 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금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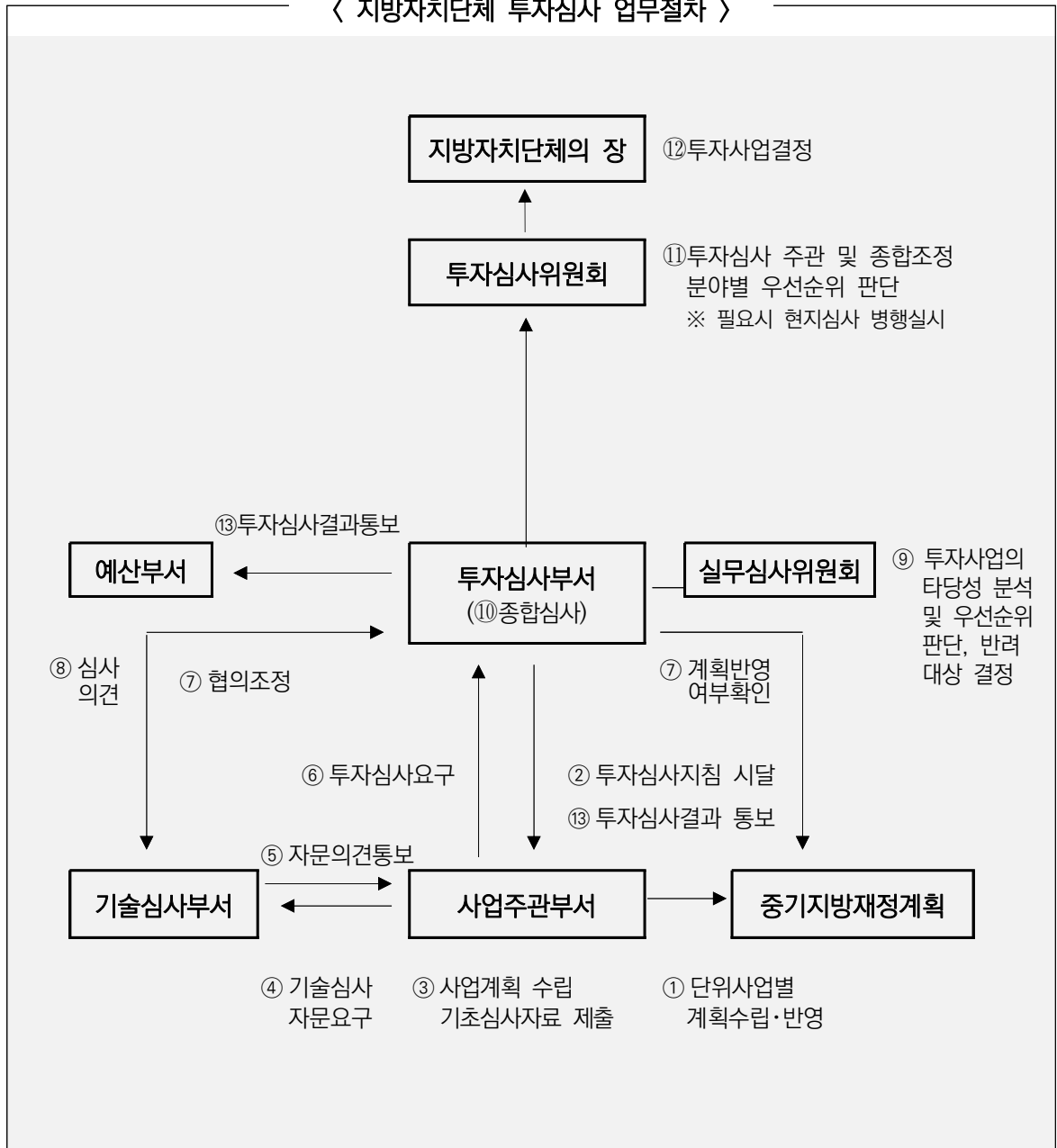
| 평가 지표 | 비 고 |
|--|---|
| ③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 ※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 ④ 주민 수해도 및 필요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세부시설별 주민 등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유사시설이 설치·운영 중(예정)인지 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 ※ '수혜주민수 / 전 주민수'로 계량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 ※ '직접·간접고용효과' 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 되지 않는지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지자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지 여부 | |
| ⑤ 사업의 시급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 ※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
| ⑥ 사업규모·비용의 적정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는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 ※ 분석된 수요, 전국 또는 유사 지자체 수준과 비교 필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

| 평가 지표 | 비 고 |
|--|--|
| 7] 사업의 타당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타당성(B/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 B/C분석에서 비용 과소산정 또는 편익 과다 산정 여부 등 구체적 내역 확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
| 8] 자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된 비용(연차별 자원부담액)이 지자체 재정여건 범위 내 총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자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본) 민간자본 협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자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
| 9]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이행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제약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정 |

※ 당해 체크리스트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6 투자심사 절차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업무절차 〉



1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주 관

- 사업 주무실·과 또는 사업소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사업규모, 배치도, 계획도면,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등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 ※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 지방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필요(예비비 10%를 포함)
-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0호, 2022.7.11.)
- (조사시기·방법) 사업계획 수립 후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행정안전부에 신청
- (조사내용)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결론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검토 사항

- 리모델링 가능 여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환경 여건(주변 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기타(기존 시설 활용방안)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 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 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2 심사의 사전절차 (이행 후 심사 의뢰 가능)

■ 사업기본계획

- 원칙적으로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용역 완료 후 심사 의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 (출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 지방재정영향평가

- 행사성 사업으로서 시·도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투자심사 의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5제1항)

■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타당성조사 등*의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이후 투자심사 의뢰
 - * ①「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제38조제1항) 및 ②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38조제5항), ③「공공기관 운영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제40조제3항), ④「민간투자법」 상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공공투자 관리센터 등이 수행하는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국·도비 확보

- (국비 확보)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국비 확보”란 ①소관 중앙부처가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②지자체의 해당 사업에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한 경우를 의미
 - * 사업 개시연도(Y) 국비: 소관부처 예산에 이미 반영[예외적으로 Y연도 사업비가 소관부처 → 지자체에 (가) 내시된 경우도 인정]
이후 연차별(Y+1~) 국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
 - 다만, ①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국비 신청을 위해 투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인 사업, ③정부예산안에 지원대상 지자체가 명시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 전에도 투자심사 가능
- (시·도비 확보)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도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시·도비 확보” 여부는 연차별 지원금액의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해당 시·도의 검토의견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기타 법령상 사전절차

- 투자심사 의뢰 전에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용역·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 ①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문체부)
※ 박물관 설립목적·필요성, 설립·운영계획, 조직·인력구성, 부지·시설명세서, 자료목록·수집계획 등 평가
- ②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문체부)
※ 도서관 설립목적·필요성, 설립·운영계획, 조직·인력구성, 부지·시설명세서, 장서 확충계획 등 평가
- ③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산업부)
※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시설·인력 및 자원대책,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계획, 부대시설 건립계획 등
-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환경부)

3 심사의 사후절차 (심사 통과 이후 가능)

■ 예산편성

-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
 -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가능**
 -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 **행사성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예산 편성 가능**
 - ※ 다만,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심사

■ 지방의회 의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후 지방의회 의결 요청 가능**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도 다시 투자심사 이후에 가능**

4 심사시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

■ 정기심사

- 정기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3월, 6월, 9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정기심사 일정(중앙의뢰심사 기준) 〉

| 구 분 | 시·도 의뢰심사 (시·군·구 → 시·도) | 중앙의뢰심사 (시·도 → 행안부) | 심 사 | 결과 통보 |
|-----|---------------------------|-----------------------|----------|--------|
| 제1차 | 1월 15일까지 | 1월 31일까지 | 3월 31일까지 | 4월 중순 |
| 제2차 | 4월 15일까지 | 4월 30일까지 | 6월 30일까지 | 7월 중순 |
| 제3차 | 7월 15일까지 | 7월 31일까지 | 9월 30일까지 | 10월 중순 |

■ 수시심사

- **(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실시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2단계 심사 사업,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등
 -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제4항
 -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제10조제1항
 - *** 「재난안전법」제60조제2항
- **(의뢰)**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절차)**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 연장 가능

5 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

-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 계획서
-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 시·도,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 구 분 | 제출 필요자료 |
|-------------------|--|
| 전체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
| 도서관 설립 사업 |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
| 시·도비 포함 사업** | 시·도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 * ①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시·도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②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
- ** 시·도비 보조사업, 시·도 전환사업, 균특자율계정 사업 등(국비 확보에 따라 정률·정액으로 시·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제외)

6 심사 이행절차

1] 기초심사자료의 작성

- (주관) 사업주무국(과)
- 중점검토 및 조치사항
 - (1차) 타당성조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 (2차)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보완
 - (3차)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부여

※ 검토사항: ①사업규모, ②공법 등 기술사항, ③사업비, ④재원조달계획, ⑤시설운영계획(조직, 관리·운영비 등) 등

②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사업주무실(과) 등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내용, 규격 등을 완비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 조치할 수 있음
 - *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 서식에 맞게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③ 사전 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사전실무심사를 실시

가. 실무심사 절차

- (주관) 투자심사 담당부서
- (심사자)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 (심사방법) 사전심사항목별 조서(별지서식 제2호)
- (심사시기)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 실시 이전
- (심사결과조치)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 조치 가능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3항

〈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사업시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나.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 판단

투자사업비 재원 중 일부가 민간자본으로 조달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 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협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의뢰 시 제출하여야 함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 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부서는 민자유치 협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면밀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유치가능, ②유치곤란, ③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 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심사기준(별지서식 붙임3)에 의하여 실무심사에서 심사
 - ①적정(평점 60점 이상), ②불투명(60점 ~ 40점), ③확보곤란(4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다. 현지실무심사(필요시)

투자사업 중 아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심사를 병행 실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

○ 대상 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현지심사시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 현지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 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 여부
-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4 지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관) 투자심사 담당부서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 ①현직 지방의회의원, ②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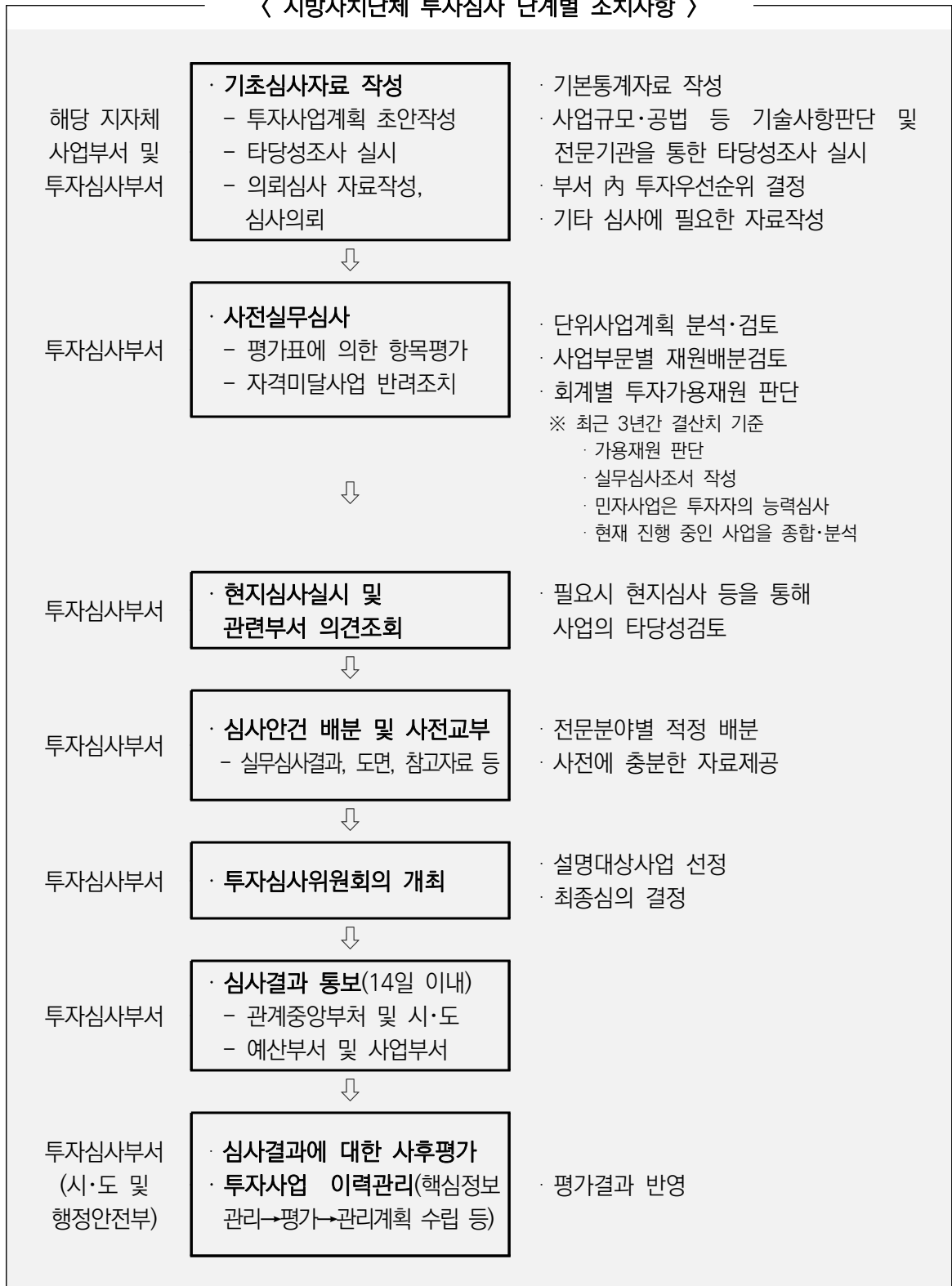
○ (심사안전 교부) 위원회 심사 전에 안전을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는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공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시에는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참석 및 사업 설명 기회 제공

- 최종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위원 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 심사안전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 주민생활 밀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심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



7 재심사

1 개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자원계획 변경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다시 심사하는 제도

2 대상

■ 총사업비 증가

- 총사업비가 투자심사 후 적정·조건부로 결정·통보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업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할 수 있음

〈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

- 물가인상분: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 적용
 - (건설공사비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 → “건설공사비지수” 검색 → 통계표 內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선택 → 조회 설정에서 시점 선택 → 업종별 지수 확인
 -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중간의 “GDP” 선택 → “2.1.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접속 → 건설투자 계정 체크 → 빠른조회 및 기간 설정
 - ※ (예) '20.1분기 99.156 → '24.1분기 121.833(22.9% ↑)
- 손실보상비 증가분: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

- 다만, 공사비의 경우에는 연면적·연장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부지비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할 수 없음

〈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사례 〉

• ('20.1월) 180억원 → ('24.1월) 300억원으로 증가(66.7% ↑)한 시설 건립 사업

| | 사업계획 변경 내역 | | 총사업비 계산 | 계산 결과 |
|------------------|------------|--------|---|----------------|
| | '20.1월 | '24.1월 | | |
| 총사업비 | 18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34.8억원 - 2억원 = 265.9억원 | 263.2억원 |
| 총사업비 (부지비 제외) | 152억원 | 267억원 | ① '20.1월~'24.1월 물가상승률은 22.9%*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② 물가상승분 = 152억원 × 22.9% = 34.8억원 | |
| 연면적 | 4,700㎡ | 5,000㎡ | | |
| 부지비 (공유지) | 28억원 | 33억원 | ① 부지면적 8,000㎡ 중 기존 부지 6,000㎡ ② 6,000㎡에 대해서는 당초 투자심사 대비 지가 상승분 제외 가능(예: 28 → 30억원으로 증가 가정 시 경우 2억원) | |
| 부지면적 | 6,000㎡ | 8,000㎡ | | |

⇒ 물가상승분 및 부지비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263.2억원(46.2% ↑)**이므로 재심사 대상

• ('20.1월) 380억원 → ('24.1월) 550억원으로 증가(44.7% ↑)한 도로 사업

| | 사업계획 변경 내역 | | 총사업비 계산 | 계산 결과 |
|------------------|------------|----------|--|----------------|
| | '20.1월 | '24.1월 | | |
| 총사업비 | 380억원 | 550억원 | 550억원 - 59.5억원 - 20억원 = 470.5억원 | 470.5억원 |
| 총사업비 (보상비 제외) | 260억원 | 210억원 | ① '20.1월~'24.1월 물가상승률은 22.9%*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② 물가상승분 = 260억원 × 22.9% = 59.5억원 | |
| 연장 | 2.0km | 1.8km | | |
| 보상비 | 120억원 | 240억원 | ① 부지면적 130,000㎡ 중 기존 부지 70,000㎡ ② 70,000㎡에 대해서는 당초 투자심사 대비 보상비 상승분 제외 가능(예: 120억원 → 140억원으로 증가 가정 시 20억원) | |
| 부지면적 | 70,000㎡ | 130,000㎡ | | |

⇒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제외 시 **470.5억원(23.8% ↑)**으로서 재심사 대상이 아니며, 타당성재조사 대상도 아님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00분의 60

■ 사업 지연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란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본공사 착공(계약일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이란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 자원계획 변경

-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이란 자원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심사기관보다 **상위기관으로 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을 의미
 - * (예) ① 자체심사 → 시·도의뢰심사 또는 중앙의뢰심사 대상
 ② 시·도의뢰심사 → 중앙의뢰심사 대상
- 다만, ①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 예산이 기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②**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 제외**

■ 사업부지 변경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 구간**의 변경, 당초 투자심사를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부지를 이동한 경우는 **제외**

■ 감사원의 요청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3 의뢰 시기

- 사업추진 단계별(사업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시공 등)로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즉시 재심사 의뢰

* 주 계약은 본 공사계약을 의미(용역계약,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 (예) ①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②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변경 부분의 시공 이전

4 제외 대상

■ 공 통

-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본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출 (부지 보상비, 선금 등은 제외)된 경우
- 기타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
 - ※ 다만, 재심사 대상(예: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등)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즉시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함
 - 재심사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 예산 집행 또는 공사 진행을 통해 기성 대가가 계약금액의 10% 이상(또는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되도록 할 수 없음

■ 총사업비 증가

- 직전 투자심사 대비 지자체의 추가 부담분(공유재산 포함) 없이 국가·민간 부담분 등만 증가한 경우(예: 펀드)
 - ※ 단, 재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투자심사 기관이 상위기관으로 변경된 경우는 재심사 이행
-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5 재심사 기관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기관

8 2단계 심사

■ 개념

- 최초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증가 등이 예견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부가된 조건에 의해 사업을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과 관련 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의 집행은 가능

■ 대상

- 당초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으로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명시된 사업**

■ 유형

- 당초 투자심사 이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
 - 통상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을 명시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이행 후 2단계 심사 의뢰**
- **사업계획의 구체화·변경, 지역 민원 해소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사업의 긴급성·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 통상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을 명시
 - 사업계획의 구체화·변경 내역, 민원 해소방안 등 **당초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심으로 보완하여 2단계 심사 의뢰**

III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1. 투자심사 사후평가
2. 투자심사 이력관리 개요
3. 투자심사 이력관리 절차
 - 1) DB 구축 단계
 - 2) 사업 검토 단계
 - 3) 사업 관리 단계
4. 이력관리 전문기관



1 투자심사 사후평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

■ 개요

- 지자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하고,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
- 행정안전부는 사후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평가대상,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가능

■ 평가 방식

- (평가시기) 매년 1회
- (대상사업) 최근 4개년 투자심사를 실시한 사업
- (행정안전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시·도)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시·군·구) 자체심사한 투자사업
- (평가방법) 지자체 자체평가(또는 교차평가)
- 주요 평가항목(예)
 - 예산반영률(예산반영건수·예산액 / 적정(조건부) 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 / 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 반영률(예산 반영 건수·금액 / 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 이행률(조건 이행건수·금액 / 조건부 사업 수·금액)
 - 2단계심사 이행 여부(2단계심사 대상 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사업 재심사 이행 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그 밖에 행정안전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자료수집 및 제출요구

- 행안부와 시·도는 해당 지자체에 예산 반영률, 미심사·재검토·부적정 사업예산의 반영률 등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요구 가능**
-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제출 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
 -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2 투자심사 이력관리 개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 개념

- 지자체에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등 단계별로 그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운영 손익 등을 평가하여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 수립

■ 대상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증양의뢰심사를 통과한 사업

■ 사업단계

※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단계별로 생성·수집

- 사업단계는 ①준비단계 → ②추진단계 → ③완료단계로 구성되며,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단계별로 생성·수집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추진 과정 중에 재심사를 이행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종 심사 기준으로 사업정보 작성

〈 투자심사 이력관리 사업단계 〉

1. 준비단계

투자심사 통과시점의 사업정보* 수집

*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사업위치, 투자심사 결과(적정 또는 조건부), 조건 이행여부, 사업량 및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등

-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최초 정보로서, 준비단계 정보와 추진·완료단계 정보 간 비교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

2. 추진단계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단계의 사업정보로서 추진하는 과정상의 정보 수집
- 매년 1년간 실제 집행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작성

3. 완료단계

- 사업 준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정보를 수집

3 투자심사 이력관리 절차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 구분 | 절차 | 수행주체 |
|---------------------------|---|---|
| ① DB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정보 제출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정보 제출 ※ 결산 기준 추진 내용 반영 ■ 자가진단 결과 작성 ※ 자가진단 기준을 토대로 작성 | 지자체 |
| | ↓↓ |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
| ② 사업 검토 | ■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 행안부(LIMAC) →지자체 |
| | ↓↓ | |
| |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자체→행안부(LIMAC) |
| | ↓↓ | |
|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 행안부(LIMAC) →중투위 보고 | |
| ↓↓ | | |
| ■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 | |
| ③ 사업 관리 | ■ 자체관리계획 수립 | 행안부 요청 →지자체 제출 |
| | ↓↓ | 행안부(LIMAC) |
| |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 |
| ↓↓ |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 행안부(LIMAC) |

1 DB 구축 단계

1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및 작성기준)

| | 준비단계 | 추진단계 | 완료단계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 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준비단계 대상 사업: '23년 심사 통과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추진·완료단계 대상 사업: '13~'22년 심사 통과 사업 | |
| 작성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결산 기준 ※ (예) '24년 이력관리 시 '23년 결산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시점 기준 |
| 작성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 시 중단사유* * (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 |

2 DB 구축 결과 검토 및 확정

-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자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제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

| 준비단계 | 추진단계 / 완료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 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 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3]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①~⑨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구 분 | 항 목 |
|------|-------------------------------------|
| 사업비 |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
| |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
| |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
| |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
| |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
| |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
| 사업내용 |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
| 사업기간 |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 완공 연도 변경 사업 |
| 기타 |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
| | ⑥ 사업 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
| |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
| |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
| |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

2 사업 검토 단계

■ 중점관리사업

- (개념)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 (주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선정 기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 ※ (예) 사업비 변동, 일정 등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된 사업, 감사원 지적 사업 등

- (선정 절차) ①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검토(LIMAC)
- ②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행안부, LIMAC)
- ③선정결과 통보(행안부 → 지자체)
- ④소명자료 제출(지자체) 및 검토(LIMAC)
- ⑤중점관리사업 선정(행안부, LIMAC)
- ⑥중앙투자심사위원회 보고 및 확정

■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 (취소 및 중지사업)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 (재심사 사업)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3 사업 관리 단계

■ 중점관리사업

가. 자체관리계획 수립

-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작성 및 제출,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내용) ①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현황 분석
- ②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 분석
- ③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④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자체관리계획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체 |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
| 대상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 방법 | ①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 | ② 사업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 | ③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 ④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 사후 조치 | ① 관리계획 수립 후 행안부 보고 |
| | ②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
| | ③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
| 검토 | ① 적정성 검토(관리계획 부실 시 보완 요구) |
| | ② 이행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 수행) |

- **(검토 및 조치사항)**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된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력 관리 DB에서 관리

나.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대상)** 전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주체)** 지자체 작성,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사후조치)** 행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이력관리 DB에서 관리하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사

■ 기타 관리사업

- **(취소 및 중지사업)** 차년도 이력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활용
- **(재심사 사업)**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시 재심사 대상 사업도 지자체에 통보

4 이력관리 전문기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3항

■ 전문기관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현재 이력관리 관련 업무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대행 중

■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 사후평가 업무
 - 준비단계(당해연도 심사사업) 사업정보 DB 구축
 - 당해연도 심사 결과 종합 분석
 - 미통과(미심사 및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조사
- 이력관리 업무
 - 추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 자가진단 결과 검토
 - 추진단계 사업 분석(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중단 사유 검토, 재심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 검토)
 - 기타 관리사업 검토(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중지사업, 재심사 사업)

IV

타당성조사

1. 타당성조사 개요
2. 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4. 타당성조사 절차
 - 1) 조사 의뢰
 - 2) 조사 과제선정 등
 - 3) 조사 약정
 - 4) 비용 산정기준
 - 5) 연구진 선정
 - 6) 중간·최종보고 및 결과 통보
 - 7) 조사 결과의 활용
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1) 기본방향
 - 2) 주요내용
6. 타당성 재조사



1 타당성조사 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개념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前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관계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 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자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 타당성조사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 신규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

-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에 반영 가능
-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 시설의 신·증축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 대상

■ 개 요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50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란

-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③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지방교육행정 연구재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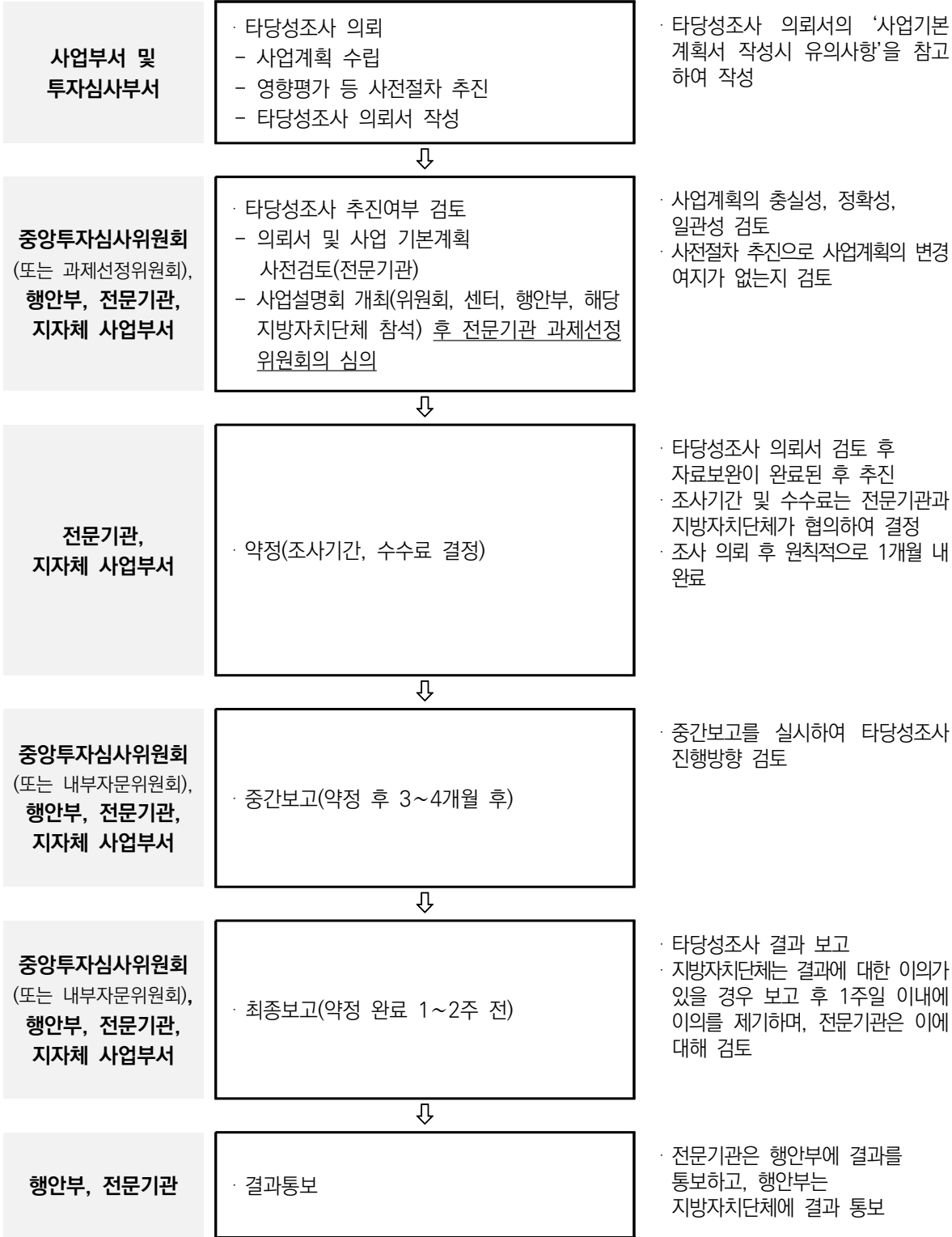
■ 업무범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타당성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협의면제 요청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 타당성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 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 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 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4 타당성조사 절차



1 조사 의뢰

■ 시 기

-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가능
 - 정기 의뢰

| 신청 단계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
| 시·군·구 → 시·도 | 1월 15일 | 4월 15일 | 7월 15일 | 9월 30일 |
| 시·도 → 행정안전부 | 1월 31일 | 4월 30일 | 7월 31일 | 10월 15일 |

- 수시 의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 타당성조사 의뢰서

-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조사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

- 1. 사업계획(안):**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및 입지, 사업수행주체,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산출내역 포함),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 2.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운영 비용 및 수입 등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가. 위치도면, 나. 상세도면(배치도 등), 다. 사진, 라. 조감도
 - 마. 그 밖에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 (건설사업)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 계획에의 반영 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기타 재정사업)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율, 사업 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등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2 조사 과제선정 등

■ 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없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의뢰서 반려 가능

〈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 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사업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획 변경 요청 가능
-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변경 여부를 결정

■ 조사 철회

-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타당성조사 철회 가능
 -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타당성조사 의뢰 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 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 약정

■ 수수료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사 기간 및 수수료 관련 약정체결
-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
 -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 절차: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 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안전부로 위탁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 기 간

○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 다만,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약정 가능

* ①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②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

○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이란

-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일반투자사업
 ②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일반 투자사업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일반투자사업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⑤ 공공청사 건립사업(다만,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는 제외)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비용 산정기준

○ 조사비용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사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조사 사례 등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산정

- (1단계) 조사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결정
- (2단계) 총사업비 규모 및 기타 추가분석 필요여부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 (3단계)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수수료** 결정

※ 다만, 여러 개의 사업(복합사업)이 하나의 조사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복성 정도를 고려하여 비용 조정 가능

| 단계 | 난이도 | 내용 | 수수료(만원) | 비고 |
|-----------|-------|---|--------------------|-----------------------------|
| 기본 수수료 | 적정성검토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청사 등) | 5,000 | 난이도 고려 |
| | 난이도 1 |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 (지방도 및 시군도 개설 사업 등) | 7,000 | |
| | 난이도 2 | •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사업인 경우(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등) | 8,000 | |
| 부가 수수료 | ① |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 500~1,000 | 특이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 | ② | •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 300~1,000 | |
| | ③ | •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 1,500~2,500 | |
| | ④ |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로 반영 | 시설별 1,500~2,500 | |
| | ⑤ | •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 기타 설문조사 | 500~3,000 | |
| | ⑥ |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 | 500~2,000 | |
| | ⑦ | •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 300~1,500 | |

5 연구진 선정

- 타당성조사는 수행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PM, Project Manager)을 수행하고, 산업체 · 학계 ·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연구진을 구성하여 추진
- 전문기관은 외부 연구진 구성·운영 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규정 수립·운영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 계약을 우선 고려

6 중간·최종보고 및 결과 통보

■ 중간·최종보고

-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확정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 실시
 - (최종보고) 약정 완료 시까지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 완료

■ 결과 통보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7 조사 결과의 활용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투자 사업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의뢰서 및 사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조건부로 통과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기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행 가능
- ①사업계획서 검토, ②경제성 분석, ③재무성 분석, ④정책적 타당성 분석, ⑤종합결론의 목차로 이루어짐
 -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약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 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 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 재무성 분석

- 재무성 분석은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 준수
 - ※ 투자사업의 유형에 따라 운영수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 등을 분석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종합결론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 개념

-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제도

■ 타당성 재조사 대상

가.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 이 경우, 지자체장은 타당성재조사 이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등 판단 필요
- 1-1.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나.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 2.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후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text{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

- 물가인상분: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 적용
 - (건설공사비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 → “건설공사비지수” 검색 → 통계표 內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선택 → 조회 설정에서 시점 선택 → 업종별 지수 확인
 -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중간의 “GDP 선택 → ”2.1.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접속 → 건설투자 계정 체크 → 빠른조회 및 기간 설정
 - ※ (예) '20.1분기 99.156 → '24.1분기 121.833(22.9% ↑)
- 손실보상비 증가분: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

-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란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이란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법령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 (예)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상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 등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관련 서식

- 붙임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 붙임2.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
- 붙임3.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서식
- 붙임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 붙임5.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 붙임6. 투자심사 면제 요구서 서식



-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계)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확인)

| | | | |
|-----|---|----|----------------------|
| 작성자 | 과 | 담당 | 성명·직위(010-0000-0000) |
| 확인자 | 과 | 담당 | 성명·직위(010-0000-0000) |

〇〇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계)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계)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 분 | Y-3 | Y-2 | Y-1 | Y | Y+1 예상 |
|----------|---------|-----|-----|---|--------|
| 인구수 (천명) | (신명조14) | | | | |
| 증가율 (%) | | | | |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km²

4. 〇〇〇〇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 소하천 %)

5. 〇〇〇〇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 구분 | 연도 | Y-1 | Y | Y+1 | Y+2 | 비고 |
|--------------|-------|---------|---|-----|-----|----|
| | 현재액 | (신명조13) | | | | |
| 신규채무액 | | | | | | |
| 상환액 | | | | | | |
| 당해연도말채무액 | | | | | | |
| 채무비비율(%) | | | | | | |
| 주민1인당채무액(천원) | 원금기준 | | | | | |
| | 원리금기준 | | | | | |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 구 분 | | 당해연도(Y) | Y+1 | 증(△)감율(%) |
|---------------------|-----------|---------|-----|-----------|
| 계 | | (신명조11) | | |
| 일반 공공 행정 | 소 계 | (신명조11) | | |
| | 입법 및 선거관리 | (신명조11)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재정·금융 | | | |
| | 일반행정 | | | |
| 공공 시설 및 안전 | 소 계 | | | |
| | 경찰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소방 | | | |
| 교 육 | 소 계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고등교육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문화 및 관광 | 소 계 | | | |
| | 문화예술 | | | |
| | 관광 | | | |
| | 체육 | | | |
| | 문화재 | | | |
| | 문화및관광일반 | | | |
| 환경 보호 | 소 계 | | | |
| | 상하수도·수질 | | | |
| | 폐기물 | | | |
| | 대기 | | | |
| | 자연 | | | |
| | 해양 | | | |
| | 환경보호일반 | | | |

| | | | | |
|-----------------------|------------|--|--|--|
| 사 회 복 지 | 소 계 | | | |
| | 기초생활보장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보육·가족및여성 | | | |
| | 노인·청소년 | | | |
| | 노동 | | | |
| | 보훈 | | | |
| | 주택 | | | |
| | 사회복지 일반 | | | |
| 보 건 | 소 계 | | | |
| | 보건의료 | | | |
| | 식품의약안전 | | | |
| 농림 해양 수산 | 소 계 | | | |
| | 농업·농촌 | | | |
| | 임업·산촌 | | | |
| | 해양수산·어촌 | | | |
| 산업 · 중소 기업 | 소 계 | | | |
| | 산업금융지원 | | | |
| | 산업기술지원 | | | |
| | 무역및투자유치 | | | |
| | 산업진흥·고도화 | | | |
| | 에너지및자원개발 | | |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 | |
| 수 송 및 교 통 | 소 계 | | | |
| | 도로 | | | |
| | 도시철도 | | | |
| | 해운·항만 | | | |
| | 항공·공항 | | | |
|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 |
| 국토 및 지역 개발 | 소 계 | | | |
| | 수자원 | | | |
| | 지역 및 도시 | | | |
| | 산업단지 | | | |
| 과학 기술 | 소 계 | | | |
| | 기술개발 | | | |
| | 과학기술연구지원 | | | |
| | 과학기술일반 | | | |
| 예비비 | 예비비 | | | |
| 기타 | 기타 | | | |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 구 분 | | Y-1 | Y | Y+1 | Y+2 | Y+3 | 비고 | |
|------------------------------------|------------------------------|----------------------------|---|-----|-----|-----|----|--|
| 세 입 | 세 입 합 계 (I) | | | | | | | |
| | 자체재원 | 소 계 | | | | | | |
| | | 지 방 세 | | | | | | |
| | | 세 외 수 입 | | | | | | |
| | | 교 부 세 | | | | | | |
| | | 기 타 | | | | | | |
| | 이전재원 | 소 계 | | | | | | |
| | | 국비보조금 | | | |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세 출 합 계 (II) | | | | | | | | |
| 경 상 경 비 (A) | 행정운영 경비 | 인력운영비 |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재무활동 | 내부거래 지출 | | | | | | |
| | | 보전지출 | | | | | | |
| 세 출 | 기 추 진 사 업 (B) |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 | | | | | |
| | | 지방비 부담액 | | | | | | |
| | 자체사업 | 사업재원 | | | | | | |
| | | 법정경비 | | | | | | |
| 신 규 사 업 (C) | 보조사업 | 보조금① (보조금, 균특, 기금 등) | | | | | | |
| | | 지방비 부담액 | | | | | | |
| | 자체사업 | | | | | | | |
| 신규가용재원 = (I)-((A)+(B)+①) | | | | | | | | |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 ~ 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 세출(II)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 신규가용재원은 세입(I)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예산부서 작성·확인)

| | | | |
|-----|---|----|----------------------|
| 작성자 | 과 | 담당 | 성명·직위(010-0000-0000) |
| 확인자 | 과 | 과장 | 성명·직위(010-0000-0000) |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 우선순위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 | | | | | | | | | 우선순위 책정사유 | 비고 |
|------|--------|------|------|--------|--------|--------|--------|-----------------|--------|-----------|--------|-----------|--------|--------------|----|
| | | | | 계 | | 기투자 | | 당해 년도 (Y) | | Y+1 계획 | | Y+2 이후 | | | |
| | | | | 자 체 | 이 전 | 자 체 | 이 전 | 자 체 | 이 전 | 자 체 | 이 전 | 자 체 | 이 전 | | |
| 계 | 건 | | | | | | | | | | | | | | |
| 1 | (신명조9)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 2] 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 3] 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 4] 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부서 작성)

| | | | |
|-----|---|----|----------------------|
| 작성자 | 과 | 담당 | 성명·직위(010-0000-0000) |
| 확인자 | 과 | 과장 | 성명·직위(010-0000-0000) |

1.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6)

1-1.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계)

- (신명조14)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1-2. 시행근거

- *관계법령(조문, 조문내용 포함),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1-3. 시행주체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1-4. 사업위치¹⁾ : (신명조14)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등 첨부*

1-5. 사업기간 :

- 건설기간 : 년 월 ~ 년 월(년 개월)
- 운영기간 : 년 월 ~ 년 월(년 개월)

1-6. 사업량²⁾ ※구체적으로 기재

◦

1-7. 총사업비 : 억원 ※ 정수표기

(단위 : 억원)

| 구 분 | 계 | 기투자 (실집행) | Y (확보액) | Y+1 (확보액) | Y+2 (확보액) | Y+3이후 (확보액) |
|-------|---------|--------------|------------|--------------|--------------|----------------|
| 계 | (신명조13) | 100(70) | 200(100) | | | |
| 국 비 | | () | () | | | |
| 시 도 비 |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군특, 시도군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1)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1-8.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현 단계까지의 사업추진 경위 및 협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1-9. 기대 효과

-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 | |
|-------------------------------|------------------------------|
| ○도로 포장율 : % → ('00년) % | ○하천 개수율 : % → ('00년) % |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 ○주택 보급율 : % → ('00년) % |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 ○경지 정리율 : % → ('00년) % |

2. 사업비 산출내역 (HY헤드라인M, 16)

※ 총사업비 항목별 산정기준은 투자심사 의뢰 직전년도 말(또는 그 이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그 이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시점과 사유를 함께 제시

(단위 ; 억원)

| 구분 | 세부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
| 총계 | 세부 산출근거 및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일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물가상승분 미반영) | | |
| 공 | 소계 | | |
| 사 | (신명조13)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녹색건축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철거공사비 | | |
| 비 | | | |
| 보 | 소계 | | |
| 상 | 부지 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 | |
| 비 | | | |
| 시 | 소계 | | |
| 설 | 설계비, 감리비 및 전면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조사 및 측량비 | | |
| 부 | | | |
| 대 | | | |
| 경 | | | |
| 비 | | | |
| 운 | 소계 | | |
| 영 | 운영장비 및 설비비 : 예)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등 | | |
| 설 | | | |
| 비 | | | |
| 비 | | | |
| 예 | 소계 | | |
| 비 |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10%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재산 가액은 예비비 산정 시 미포함 | | 기타 항목은 제외 |
| 비 | | | |
| 기 | 소계 | | |
| 타 | 자치단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나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다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액 등 우발채무액 미포함) | | |

-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 3)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3.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HY헤드라인M, 16)

| 구분 | 사업내용 | 법적근거 | 추진기간 | 세부추진내용 | ☆승인기관 |
|----|--|------|------|--------|-------|
| | (신명조13, 장평90)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는 빠짐없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추진상 구분은 사업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 (HY헤드라인M, 16)

4-1.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회제출 연월일)☆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 사업명 | 사업개요 | 재원 | 연도별투자계획 | | | | | |
|---------------|------|--------|---------|-----|---|-----|-----|-------|
| | | | 소계 | 기투자 | Y | Y+1 | Y+2 | Y+3이후 |
| (신명조11, 장평90) | | 계 | | | | | | |
| | | 국고보조 | | | | | | |
| | | 균특보조 | | | | | | |
| | | 기금보조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
| | | (채무부담)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기타) | | | | | | | | |

4-2. 지방재정영향평가(신명조14, 진하게)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위원회 개최연월일)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5호 서식

| 심사 안건 | 심사 내용 | 심사 결과 |
|-------|-------|-------|
| | | |

4-3.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 관계기관 | 근거 | 협의일자 | 협의내용 |
|---------|----|------|------|
| (신명조13) | | | |
| | | | |

4-4.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첨부 : 타당성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사 자료 (HY헤드라인M, 16)

5-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계)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5-2.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계)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도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 계획 등) 반영여부 등
-

5-3.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계)

- (수혜도) 전체 주민의 % (신명조14) = 혜택 주민 수 / 전체 주민 수 * 100%
- 지역언론 및 지방의회 자료,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등 관련 내용 제시
- 특히, 기피시설의 경우 사전적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갈등 해소 노력 제시

5-4.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계)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작성
-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5-5.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계)

- 타당성조사(자체타당성조사 포함)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

5-6. 자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계)

- 국비 등 이전재원 확보방안 및 자원조달 가능성 제시,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 작성
-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 사업예산 확보 방안(사전협의 등) 및 조달 가능성 구체적으로 작성(공식문서 첨부 등)
- 지방채의 경우, ◦ 지방채 :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SPC 등 설립 등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자금, 자원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7. 일자리 창출 효과(신명조14, 진하게)

- 00명(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신명조 14)
-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http://www.kli.re.kr)의 2023년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 | |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예산액 | |
| | 총고용(명) | *직접고용효과 + 간접고용효과 |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 *(직접고용효과 +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
|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 |
| 고용효과 산출내역 |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
|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¹⁾

1) <표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¹⁾(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²⁾)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 및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 | |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예산액 | |
| | 총고용(명) |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
|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 |
| 고용효과 산출내역 |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
|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 | |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small>(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small> | 예산액 |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
| | 총고용(명) |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
|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p>□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p> <p>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p> <p>-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p> <p>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p> <p>-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p> <p>※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p> | |
| 고용효과 산출내역 <small>(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small> | <p>□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p> <p>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p> <p style="padding-left: 20px;">a. $21.5\text{억원}^1 \div 0.2418\text{억원/명}^2 = 88.9\text{명}$</p> <p style="padding-left: 40px;">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p> <p style="padding-left: 40px;">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p> <p>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p> <p>-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b. $339.7\text{억원} \div 0.28\text{억원/명} = 1,213.2\text{명}$</p> <p>-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c. $26.1\text{억원} \div 0.91\text{억원/명} = 28.7\text{명}$</p> <p>-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d. $19.9\text{억원} \div 0.91\text{억원/명} = 21.9\text{명}$</p> <p>-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e. $1.1\text{억원} \div 0.28\text{억원/명} = 3.9\text{명}$</p> <p>-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f. $4.3\text{억원} \div 1.11\text{억원/명} = 3.9\text{명}$</p> <p>※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p> <p>*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표1~4> 등 근거</p> | |
|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5-8.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계)

- (신명조 14)
-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5-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계)

- (신명조 14)
-
-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 작성예시 ① '00. 0.00, 00일보, “00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0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0건으로 기재)
- ② '00. 0.00~0.00 , 00면 주민 000명, “00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00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0.00 현재 주민반발은 00 된 상황)

5-10. 기 타(신명조14, 진하계)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자체심사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계 ※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계)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계)

- 사업비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 구 분 | 계 | 국 비 | 시 도 비 | 시군구비 | 지 방 채 | 기 타 |
|-----|----------|-----|-------|------|-------|-----|
| 당 초 | (신명조 12) | | | | | |
| 변 경 | | | | | | |
| 증감 | | | | | | |

- 사업규모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 구 분 | 당 초 | | 변 경 | | 증액사유 |
|-------|----------|------|-----|------|------|
| | 사업비 | 사업규모 | 사업비 | 사업규모 | |
| 계 | (신명조 12) | | | | |
| 공사비 | | | | | |
| - 토목 | | | | | |
| - 건축 | | | | | |
| 보상비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기 타 | | | | | |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HY헤드라인M, 16)

6-1.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계)

◦ (신명조14) 조직도, 구성원 등 표기

◦

6-2. 사업수지 전망(신명조 14, 진하계)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수지 전망(신명조 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준공년도 (Y) | Y + 1 | Y + 2 | Y+3 |
|------------|-------|-------------|-------|-------|-----|
| 수 입 (A) | 계 | (신명조 12) | | | |
| | 입 장 료 | | | | |
| | 사 용 료 | | | | |
| | : | | | | |
| 지 출 (B) | 계 | | | | |
| | 인 건 비 | | | | |
| | 시설운영비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
| 손 익(C=A-B) | | | | | |

6-3.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계)

〈시설별 운영 총괄〉 ☆

| 층별 | 세부시설 설치계획 | 수용인원 | 운영주체 |
|-------|---------------------------|------|------|
| 지상5층 |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 | 00시군 |
| 지상4층 | | | 00기관 |
| | | | 00공단 |
| 지하1층 | | | |
| ... | | |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콘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5, 진하계)

- 콘텐츠 확보 내역

| 현 행(개) | 계 획(개) |
|--|--|
| <p>*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p> <p>ex) 000 관련 유물 : 00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 <p>*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p> |

- 확보방안
-
- 자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콘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7. 사업 유형에 따른 추가 자료

7-1. 도로사업¹⁾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최근3년간 1일교통량 ²⁾ |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통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r> </tbody> </table> | 구분 | ○○년 | ○○년 | ○○년 | 교통량 | 대 | 대 | 대 |
| 구분 | ○○년 | ○○년 | ○○년 | | | | | | |
| 교통량 | 대 | 대 | 대 | | | | | | |
|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 | | | | | | | |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 ·반영년도 : ·사 업 비 : | | | | | | | | |
| 국가 및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³⁾ | ·국도(국도관리청) ·기타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 | | | | | | | | |

〈작성요령〉

-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7-2.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 구 분 | 시설명 (건축연도) ¹ | 총사업 비 (억원) | 규모 ² | 위치 ³ | 운영 주체 및 방법 ⁴ | 연간 이용자수(명) | | | 필요시설 및 면적(m ²) ⁵ | 수익성 ⁶ |
|-----|----------------------------|------------------|-----------------|-----------------|-------------------------------|---------------|----|-----|--|------------------|
| | | | | | | 무료 | 유료 | 과부족 | | |
| 관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인근 | 계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m²) 등을 기재.
-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 4]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 5]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 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 6]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지방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여부

| 용역 기관 | 용역기간 | 용역결과 |
|-------|------|------|
| | | |

○ 지방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 구분 | 현청사 | | 신축청사 | 비고 |
|---------------------|---------|---------|------|------------------|
| | 최초신축 시점 | 투자심사 시점 | | |
| 공무원 수 (정원/현원) | | | |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
| 위치 | | | | 도로명 주소 |
| 신축연도 | | | | |
| 부지면적 | | | | |
|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 | | 신증축 포함 |
| 지하/지상 층수 | | | | |
| 건물 동수 | | | | 건축물대장 기준 |
| 재산가액 | | | | 토지+건물 가액 |
| - 토지 | | | | 공시지가 기준 |
| - 건물 | | | | 시가표준액 기준 |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 구 분 | 인구수 | 기준면적 | 연면적 (신청면적) | 해소면적 | 청사면적 |
|-----|-----|------|---------------|------|------|
| 현 재 | | | | | |
| 신 축 | | | | | |

2) 의회

(기준 : 천명, ㎡)

| 구 분 | 인구수 | 기준면적 | 연면적 (신청면적) | 해소면적 | 청사면적 |
|-----|-----|------|---------------|------|------|
| 현 재 | | | | | |
| 신 축 | | | | | |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 구 분 | 인구수 | 기준면적 | 연면적 (신청면적) | 해소면적 | 청사면적 |
|-----|-----|------|---------------|------|------|
| 현 재 | | | | | |
| 신 축 | | | | | |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예시)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00시도 00시군구)

| 구분 | | 내용 | 비고 | |
|--------------------|--------------------------------|---|---|---|
| 사업규모 | |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 '00.0. | | |
| 검토 사항 | 청사 현황 | 현재 | ○ 준공년도 : '00. 0.0.(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연 면 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m ²)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 |
| | | 신축 계획 | ○ 부지면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연 면 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m ²)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 (증감현황) - 부지 00m ² 증 - 연면적 00m ² 증 |
| | 물리적 여건 | ○ 안전등급 : 00등급(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 | |
| | 환경여건 |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필요시 별지 작성) ○ | | |
|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 객관적 산출근거 표기 | |
|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 | | | |
| 종합의견 | |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 | |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 확인자 : 00시도 00시군구 00실국장 000 (서명)

7-3. 관광개발사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 ¹⁾ | ·지정일 : ·승인일 :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 | | | | | | | | | | | | | | | | | |
| 관광수요 예측 ²⁾ |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향후 5년간 증가예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년</td> <td>○○년</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r> </table> | ○○년 | ○○년 | ○○년 | 증가율 | 명 | 명 | 명 | % | ○○년 | ○○년 | ○○년 | ○○년 | ○○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려 등 |
| ○○년 | ○○년 | ○○년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명 | 명 | 명 | % | | | | | | | | | | | | | | | | | |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 | | |
| 명 | 명 | 명 | 명 | 명 | | | | | | | | | | | | | | | | |
|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 ³⁾ |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 : | ·지정일 : ·승인일 : | | | | | | | | | | | | | | | | | | |
| 과부족 및 필요현황 | ·관광수요 : 명, m ² ·공급현황 : 명, m ² ·과 부 족 : 명, m ² ·추가개발 : | 수요 및 공급현황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지역내 관광수요 및 공급 현황으로 산출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 2)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교
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7-4.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 ¹⁾ |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00.00 ~ '00.00)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 | | |
| |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00.00 ~ '00.00)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 | | |
| | <분양수요 및 전망> - 기 조 성 : m ² , 공급현황 : m ² (분양률 %) - 조 성 중 : m ² , 예정수요 : m ² (예상 분양률 %) - 총 분양수요 : m ² , 총 예정수요 : m ² (과부족 : m ²) - 신규조성 : 000사업, m ² - 분양율(예상) : % (분양기간 : '00.00 ~ '00.00)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 | | |
| 조성원가의 적정성 ²⁾ | (단위 : m ² , 백만원) | | | |
| | 사업명 | 심사의뢰사업 | ① | ② |
| | 규모 | | | |
| | 총사업비 | | | |
| | 보상비 | | | |
| | 공사비 | | | |
| | 기타 | | | |
| ※ 조성단가 : m ² 당 천원, 분양단가 : m ² 당 천원 | | | | |
|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 ³⁾ | · 조사기간 : '00.00 ~ '00.00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 조사방법 :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000천m ² (분양면적의 00%) | | | |
| 기타 참조사항 | ○ ○ | | | |

<작성요령>

- 1] 지방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인근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 3] 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7-5. 행사성 사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사개요 | ·행사명: ·행사일시: '00. 00. 00. ~ 00. 00.(일간) ·행사위치: 00시 컨벤션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규모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table border="1" data-bbox="357 552 977 667"> <tr> <td>00년</td> <td>00년</td> <td>00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table border="1" data-bbox="357 737 977 852"> <tr> <td>00년</td> <td>00년</td> <td>00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 00년 | 00년 | 00년 | 증가율 | 명 | 명 | 명 | % | 00년 | 00년 | 00년 | 증가율 | 명 | 명 | 명 | %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 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 | | | | | | | | | |
| 00년 | 00년 | 00년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명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년 | 00년 | 00년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명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익계산서 | <table border="1" data-bbox="357 915 977 1384">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금액(백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수 입 (A)</td> <td>계</td> <td></td> </tr> <tr> <td>입 장 료</td> <td></td> </tr> <tr> <td>사 용 료</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5">지 출 (B)</td> <td>계</td> <td></td> </tr> <tr> <td>인 건 비</td> <td></td> </tr> <tr> <td>시설운영비</td> <td></td> </tr> <tr> <td>감가상각비</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colspan="2">손 익(C=A-B)</td> <td></td> </tr> </tbody> </table> | 구 분 | | 금액(백만원) | 수 입 (A) | 계 | | 입 장 료 | | 사 용 료 | | : | | 지 출 (B) | 계 | | 인 건 비 | | 시설운영비 | | 감가상각비 | | : | | 손 익(C=A-B) | | | 근거: '00 0000축제정산보 고서 |
| 구 분 | | 금액(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입 (A)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장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출 (B)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건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익(C=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근거: '00 0000축제 사후평가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타당성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4.5%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분석 조건

-
-

※ 분석기준연도,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용·효과

■ **비용**

| 구 분 | | 비용(백만원) | 비 고 |
|--------------|-------|---------|-----|
| 전체 | 총 계 | | |
| 조성비 (건립비) | 건축비 | | |
| | 설계비 | | |
| | 시설부대비 | | |
| | 예비비 | | |
| | 기타 | | |
| | 소계 | | |
| 운영비 | 인건비 | | |
| | 용역비 | | |
| | 시설관리비 | | |
| | 소계 | | |

■ **편익**

| 구 분 | | 편익(백만원) | 비 고 |
|------------|------|---------|-----|
| 전체 | 총 계 | | |
| 금전적 수입 | 사용료 | | |
| | 이용료 | | |
| | 수수료 | | |
| | ... | | |
| | 소 계 | | |
| 비금전적 수입 | 시간가치 | | |
| | ... | | |
| | 소계 | | |

할인율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 할인년차 | | 편익 | 비용 |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 비용현재가 (B) | 순현재가치 (A-B) |
|------|----|----|----|--------------|--------------|--------------|----------------|
| 연차 | 연도 | | | | | | |
| 0 | | | | | 0 | 1,219,000 | -1,219,000 |
| 1 | | | | | 0 | 6,931,000 | -6,931,000 |
| 2 | | | | | 0 | 13,862,000 | -13,862,000 |
| 3 | | | | | 0 | 0 | 0 |
| 4 | | | | | 0 | 0 | 0 |
| 5 | | | | | 0 | 0 | 0 |
| 6 | | | | | 0 | 0 | 0 |
| 7 | | | | | 0 | 0 | 0 |
| 8 | | | | | 0 | 0 | 0 |
| 9 | | | | | 0 | 0 | 0 |
| 10 | | | | | 0 | 0 | 0 |
| 11 | | | | | 0 | 0 | 0 |
| 12 | | | | | 0 | 0 | 0 |
| 13 | | | | | 0 | 0 | 0 |
| 14 | | | | | 0 | 0 | 0 |
| 15 | | | | | 0 | 0 | 0 |
| 16 | | | | | 0 | 0 | 0 |
| 17 | | | | | 0 | 0 | 0 |
| 18 | | | | | 0 | 0 | 0 |
| 19 | | | | | 0 | 0 | 0 |
| 20 | | | | | 0 | 0 | 0 |
| 21 | | | | | 0 | 0 | 0 |
| 21 | | | | | 0 | 0 | 0 |
| 22 | | | | | 0 | 0 | 0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 29 | | | | | | | |
| 30 | | | | | | | |
| 계 | | 0 | 0 | - | 0 | 22,012,000 | -22,012,000 |

◦ 분석결과

| 구 분 | 비용편익비(B/C Ratio) | 순현재가치(NPV) | 내부수익률(IRR) |
|-----|------------------|------------|------------|
| 수 치 | | | |

[붙임2] 타당성조사 세부 내용

| 타당성조사 지적 내용 ¹⁾ | 반영 내용 ²⁾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작성요령〉

- 1) 타당성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 2) 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구 분 | 기 준 | 평가배점 | 평 점 | 비 고 |
|---|--|---|-----|-----|
| 계 | | 100점 | | |
| 부채비율 (2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 | |
| 자본금 (2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 | |
|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5) | | |
|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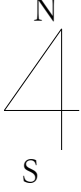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구 분 | 기 준 | 평가배점 | 평 점 | 비 고 |
|--------------------------------|--|--|-----|-----|
| 계 | | 100점 | | |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 (70) (65) (60) (55) (50) (45) | | |
|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 (30) (0) | | |

-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위 치 도(신명조24, 진하계)

| | | | |
|---|--------------------------------|-------|----|
|  |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계) | 범 례 | |
| | | 금회시공 | 적색 |
| | | 기 시 공 | 청색 |
| | | 장래시공 | 황색 |

칼 라

현 장 사 진 (신명조24 , 진하계)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계)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V

관
련
서
식

붙임2**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계)**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계) (○○시·도 본청)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 구 분 |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 | | | | | 검토결과 | 검토자 (직, 성명) |
|--------------|-----------------|-----|---|-----|-----|-------|----------|-----------------------|
| | 계 | 기투자 | Y | Y+1 | Y+2 | Y+3이후 | | |
| 계 | | | | | | | (신명조 12) | |
| 이전 재 원 | 국 비 | | | | | | | 부처 |
| | 시도비 | | | | | | | 시도 ※ 교특 시도자율계정인 경우 |
| 자체재원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종합실무 의 건 | | | | | | | |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신명조 32 진하계)

○○시·도

(신명조24, 진하계)

| 심 사 항 목 | 검 토 의 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정책과의 부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계획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 등 • 중앙 또는 시도 허가승인대상사업 (허가·승인권자) (근거법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이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사전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허가 또는 승인 기관,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업 시행 또는 시·도비 보조 신청 등을 위해서 사전에 이행이 필요한 법정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절차명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의 타당성 • 투자사업의 시급성·필요성 • 투자사업의 중복성(유사사업 등) •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 사업 미추진시 발생 가능한 문제? * 주민안전, 환경보전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 * 기 설치된 지역 시설 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 * 시·도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 등이 있는지? 이에 따른 시설 규모 등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 기준명을 반드시 기재 * 사업내용, 다른 유사지역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설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

| 심 사 항 목 | 검 토 의 견 | | | | | | | | | | |
|--|--|-------|-------|----------|-------|----------|--|--|--|--|--|
| <p>◦ 시·도비 지원 가능성</p> <p>•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여부 (가/부) *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가/부로 기재해 주시고, 반영되어 있는 경우 반영된 사업명과 연도별 지원금액을 억원 단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24년 이후 시·도비 지원액 및 향후 지원계획</p> | <p>(사업명)</p> <p>(지원액) 총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3년</td> <td>2024년</td> <td>2025년</td> <td>2026년</td> <td>2027년 이후</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 시·도비는 00 재원(시·도 보조, 시·도 전환사업, 균특자율계정 등)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00억원 지원(예정)이며 -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000억원 지원예정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p>◦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p> <p>• 사업시행으로 해당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p> <p>• 사업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등</p> | <p>■ -</p> <p>*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각종 위험 및 불확실성(지역 주민 반대, 이해집단 갈등, 주민건강·안전문제, 사업 위험성, 사업불확실성 및 제약요인 등)</p> <p>■ -</p> | | | | | | | | | | |
| <p>◦ 종합 의견</p> <p>• 사업추진 적 정()</p> <p>• 사업추진 조건부()</p> <p>• 사업추진 재검토()</p> <p>• 사업추진 부적정()</p> <p>* 적 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반영 및 정상추진</p> <p>* 조건부 : 선행절차 이행, 재원대책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p> <p>*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계획, 재무상환계획 등 종합적 재검토</p> <p>* 부적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사업</p> | <p>■ -</p> <p>* 전체적인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고,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선행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

사업명 : ○○○ 사업

붙임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1. 투자심사 결과

1-1.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계 | |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V
관련
서식

1-2.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계 | | | | | | | | | | | | |
| 시·도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자치구 | | | | | | | | | | | | |

1-3.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 구분 | 대상 | | 적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려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소계 | | | | | | | | | | | |
| | 입법 및 선거관리 | | | | | | | | |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 | | | | |
| | 재정·금융 | | | | | | | | | | | |
| | 일반행정 |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소계 | | | | | | | | | | | |
| | 경찰 | | | | | | | |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 | | | | |
| | 소방 | | | | | | | | | | | |
| 교육 | 소계 | | | | | | | | | | | |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 | | | | | | | |
| | 고등교육 | | | | | | | |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 | | |
| 문화 및 관광 | 소계 | | |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 | | | | |
| | 관광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문화재 | | | | | | | | | | | |
| | 문화 및 관광일반 | | | | | | | | | | |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환경 보호 호 | 소 계 | | | | | | | | | | | |
| | 상하수도·수질 | | | | | | | | | | | |
| | 폐기물 | | | | | | | | | | | |
| | 대기 | | | | | | | | | | | |
| | 자연 | | | | | | | | | | | |
| | 해양 | | | | | | | | | | | |
| | 환경보호일반 | | | | | | | | | | | |
| 사 회 복 지 | 소 계 | | | | | | | | | | | |
| | 기초생활보장 | | | | | | | |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 | | | | |
| | 보육·가족 및 여성 | | | | | | | | | | | |
| | 노인·청소년 | | | | | | | | | | | |
| | 노동 | | | | | | | | | | | |
| | 보훈 | | | |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 | 사회복지일반 | | | | | | | | | | | |
| 보 건 | 소 계 | | | | | | | | | | | |
| | 보건의료 | | | | |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 | | | | | | | | | | |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농림해양수산 | 소 계 | | | | | | | | | | | | |
| | 농업·농촌 | | | | | | | | | | | | |
| | 임업·산촌 | | | | | | | | | | | | |
| | 해양수산·어촌 | | | | | | | | | | | | |
| 산업·중소기업 | 소 계 | | | | | | | | | | | | |
| | 산업금융지원 | | | | | | | | | | | | |
| | 산업기술지원 | | | | | | | | | | | | |
| | 무역 및 투자유치 | | | | | | | | | | | | |
| | 산업진흥·고도화 | | | | | | | | | | | | |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 | | | | | | | |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 | | | | | | | | | | |
| 수송및교통 | 소 계 | | | |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 | 도시철도 | | | | | | | | | | | | |
| | 해운·항만 | | | | | | | | | | | | |
| | 항공·공항 | | | | | | | | | | | | |
|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 | | | | | | | | |
| 국토및지역개발 | 소 계 | | | | | | | | | | | | |
| | 수자원 | | | | | | | | | | | | |
| | 지역 및 도시 | | | | | | |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 | | | |

1-4. 투자비 규모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계 | | | | | | | | | | | | |
| 20억원 미만 | | | | | | | | | | | | |
| 20억원-40억원 미만 | | | | | | | | | | | | |
| 40억원-100 억원 미만 | | | | | | | | | | | | |
| 100억원-200 억원 미만 | | | | | | | | | | | | |
| 200억원-300 억원 미만 | | | | | | | | | | | | |
| 300억원-500 억원 미만 | | | | | | | | | | | | |
| 500억원 이상 | | | | | | | | | | | | |

1-5.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 | | | | | | | | | | |
| 중앙심사 | | | | | | | | | | | | |
| 시도심사 | | | | | | | | | | | | |
| 시군구심사 | | | | | | | | | | | | |

1-6.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대 상 | | 조건부 | | 재 검 토 | | 부적정 | | 반 려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계 | | | | | | | | | | |
| 사업목적 실현불가 | | | | | | | | | | |
| 지자체시행 비대상 | | | | | | | | | | |
| 중복 과잉투자 | | | | | | | | | | |
|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 | | | | | | | | | |
|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 | | | | | | | | |
|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 | | | | | | | | | |
| 경제적 타당성 저조 | | | | | | | | | | |
| 사업추진 준비 미비 | | | | | | | | | | |
| 주민수해도 저조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희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해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②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계 | | 시·도 | | 시·군·구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계 | | | | | | |
| 사업목적 실현불가 | | | | | | |
| 지자체시행 비대상 | | | | | | |
| 중복 과잉투자 | | | | | | |
|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 | | | | | |
|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 | | | | |
|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 | | | | | |
| 경제적 타당성 저조 | | | | | | |
| 사업추진 준비 미비 | | | | | | |
| 주민수해도 저조 | | | | | | |
| 기 타 | | | | | | |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 단 체 명 | 계 | 공 무 원 | 교 수 | 공 회 인 사 | 전 문 연 구 원 | 지 방 의 회 의 원 | 시 민 단 체 소 속 원 | 기 타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시·도본청 | | | | | | | | |
| 시·군·구계 | | | | | | | | |
| 시 계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 계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계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 | |
|------------------|--|
| 제 목 | |
| 관련규정 | |
| 유 연 영 황 | |
| 문 제 점 | |
| 발 전 방 안 |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계)

○○사·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 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자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자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 간 일관성이 없는 경우타당성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용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 구 분 | 계 | 기투자 | Y년 | Y+1년 | Y+2년 | Y+3년 | ■ ■ ■ | 준공 |
|--------|---|-----|-----|------|------|------|-------|----|
| 계(백만원) | | | () | | | | | |
| 국 비 | | | () | | | | | |
| 시 도 비 | |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예비비 및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 항 목 | 규격 | 단위 | 수량 | 산출내역 및 단가 | 금액 (백만원) | 비 고 |
|---------------------------------|----|----|----|-------------------------|-------------|--|
|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 | | | | | |
| 공사비 ① | | | | | |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
| ①-1 | | | | | | |
| ①-2 | | | | | | |
| ①-3 | | | | | | |
| 보상비 ② | | | | | |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
| ②-1 | | | | | | |
| ②-2 | | | | | | |
| 시설부대경비 ③ | | | | | |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
| ③-1 | | | | | | |
| ③-2 | | | | | | |
| ③-3 | | | | | | |
| ③-4 | | | | | | |
| ③-5 | | | | | | |
| 운영설비비 ④ | | | | | |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
| ④-1 | | | | | | |
| ④-2 | | | | | | |
| 예비비 ⑥ | | | |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 10% | |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 항 목 | 산출내역 | 금액(백만원) | 비 고 |
|--------------------------|------|---------|--|
|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 | | |
| 인건비 ① | |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
| ①-1 | | | |
| ①-2 | | | |
| ①-3 | | | |
| 운영관리비 ② | | |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②-1 | | | |
| ②-2 | | | |
| 유지보수비 ③ | | |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
| ③-1 | | | |
| ③-2 | | | |
| ③-3 | | | |
| 기타 ④ | | | 물품구입비, 재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 ④-1 | | | |
| ④-2 | | | |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 상부 건축물명 | 규모(연면적/대지,㎡) | 시설개요 | 연간 운영비용(천원) | 연간 매출액(천원) | 비고 (산출근거) |
|---------|----------------|-----------|-------------|------------|-----------|
| 예) 호텔 | 124,677/19,452 | -등급 및 객실수 | 123,000 | 123,000 | |
| | | | | | |
| | | | | | |
| | | | | | |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 구분 | | Y년 | Y+1년 | Y+2년 | Y+3년 | Y+4년 | ■ ■ | 준공 |
|----------------|--------|----|------|------|------|------|-----|----|
|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 | | | | | | | |
| 총사업비 (백만원) | 소계 ① | | | | | | | |
| | 공사비 | | | | | | | |
| | 보상비 | | | | | | | |
| |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운영설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운영비 (백만원) | 소계 ②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운영관리비 | | | | | | | |
| | 유지관리비 | | | | | | | |
| | 기 타 | | | | | | | |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 구분 | 사업내용 | 법적근거 | 추진기간 | 세부추진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및 기타 필수자료

※ 사업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기타필수자료의 예: ①청사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리모델링 대안, ②전시시설 사업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③환경시설 대보수 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보고서 등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 단계 | 사업구상 | 설계 및 인허가 | | | | | 공사 | 사업준공 |
|----|------|----------|-------|-------|-------|-----|----|------|
| 내용 | 기본구상 | 기획 업무 | 계획 설계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인허가 | 시공 | 사용승인 |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 구분 | | 내용 | |
|-------------------------|----------------|--|--|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 |
| | 시행 근거 |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
|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 법규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 |
| | 계획인원 |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 |
| | 규모(면적) 기준 |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 |
| |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 개략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 | 각층 평면도 | |
| 개략 단면도 |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 운영계획(운영비) | |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 |
| 현장 조사 | 대지·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 대지·주변현황 분석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 | 사용자 조사 |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 |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 |
| 설계지침서 | | 공사관련 예산서 | |
| 프로젝트 공정표 |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 | 규모, 층수, 용도 비교 | |
| | | 시설, 마감재 비교 | |
| | | 공사비 비교 | |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 구분 | | 내용 | |
|----------|-------------------------------------|--|---|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 |
| | 시행 근거 |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
| 사업 계획 | 사업수행계획 |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 |
| | 개발여건 분석 |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 |
| | 개발계획 기본구상 |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 |
| | 구역경계 설정 |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 |
| |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 |
| |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 |
| |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
| | | 공원녹지계획 | |
| | |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
| | |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
| | |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
| | |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
| | |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
| 상부건축물 계획 | 공장(개략 공사비/운영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 | |
| 사업성 분석 | 총사업비, 분양수입, 자원조달계획 등 | | |
| 분양계획 |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 | |
| |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회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붙임6

투자심사 면제 요구서 서식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투자심사 면제 요구서

(신명조 32 진하게)

○○사·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면제 요구서 제출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전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검토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별표 제2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면제 요구서 제출 시 다음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① 면제 요구의 근거

- 면제 협의 근거 법령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의 경우, 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의결 안건

②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 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 요구서에 포함

③ 사전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 자료 및 보조 자료 제출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와 재무모델 필수 제출([별첨 1 사업성 검토 보고서] 참고)
- 사업의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수입 등 산정근거와 결과를 제시
- 재원부담 주체별(지자체 포함) 재원조달 금액(비율) 등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성(수익성) 검토 결과 제시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계)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계)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 분 | Y-3 | Y-2 | Y-1 | Y | Y+1 예상 |
|-------------|-------------|-----|-----|---|-----------|
| 인구수 (천명) | (신명조14) | | | | |
| 증가율 (%) | | | | |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km²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상수도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 자동차보유 : 천대
- 주택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 구분 | 연도 | | Y-1 | Y | Y+1 | Y+2 | 비고 |
|------------------|-------|--|---------|---|-----|-----|----|
| | | | | | | | |
| 현 재 액 | | | (신명조13) | | | | |
| 신규채무액 | | | | | | | |
| 상 환 액 | | | | | | | |
| 당해연도말채무액 | | | | | | | |
| 채무비율(%) | | | | | | | |
|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 원금기준 | | | | | | |
| | 원리금기준 | | | | | | |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 구 분 | | 당해연도(Y) | Y+1 | 증(△)감율(%) |
|---------------------|-----------|---------|-----|-----------|
| 계 | | (신명조11) | | |
| 일반 공공 행정 | 소 계 | (신명조11) | | |
| | 입법 및 선거관리 | (신명조11) | |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
| | 재정·금융 | | | |
| | 일반행정 | | | |
| 공공 시설 및 안전 | 소 계 | | | |
| | 경찰 | | | |
| | 재난방재·민방위 | | | |
| | 소방 | | | |
| 교 육 | 소 계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고등교육 | | | |
| | 평생·직업교육 | | | |
| 문화 및 관광 | 소 계 | | | |
| | 문화예술 | | | |
| | 관광 | | | |
| | 체육 | | | |
| | 문화재 | | | |
| | 문화및관광일반 | | | |
| 환경 보호 | 소 계 | | | |
| | 상하수도·수질 | | | |
| | 폐기물 | | | |
| | 대기 | | | |
| | 자연 | | | |
| | 해양 | | | |
| | 환경보호일반 | | | |

| | | | | |
|-----------------------|------------|--|--|--|
| 사 회 복 지 | 소 계 | | | |
| | 기초생활보장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보육·가족및여성 | | | |
| | 노인·청소년 | | | |
| | 노동 | | | |
| | 보훈 | | | |
| | 주택 | | | |
| 사회복지 일반 | | | | |
| 보 건 | 소 계 | | | |
| | 보건의료 | | | |
| | 식품의약안전 | | | |
| 농림 해양 수산 | 소 계 | | | |
| | 농업·농촌 | | | |
| | 임업·산촌 | | | |
| | 해양수산·어촌 | | | |
| 산업 · 중소 기업 | 소 계 | | | |
| | 산업금융지원 | | | |
| | 산업기술지원 | | | |
| | 무역및투자유치 | | | |
| | 산업진흥·고도화 | | | |
| | 에너지및자원개발 | | |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 | |
| 수 송 및 교 통 | 소 계 | | | |
| | 도로 | | | |
| | 도시철도 | | | |
| | 해운·항만 | | | |
| | 항공·공항 | | | |
|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 |
| 국토 및 지역 개발 | 소 계 | | | |
| | 수자원 | | | |
| | 지역 및 도시 | | | |
| | 산업단지 | | | |
| 과학 기술 | 소 계 | | | |
| | 기술개발 | | | |
| | 과학기술연구지원 | | | |
| | 과학기술일반 | | | |
| 예비비 | 예비비 | | | |
| 기타 | 기타 | | | |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 구 분 | | Y-1 | Y | Y+1 | Y+2 | Y+3 | 비고 | |
|-----------------------------|------------------------------|----------------------------|---|-----|-----|-----|----|--|
| 세 입 | 세 입 합 계 (I) | | | | | | | |
| | 자체재원 | 소 계 | | | | | | |
| | | 지 방 세 | | | | | | |
| | | 세 외 수 입 | | | | | | |
| | | 교 부 세 | | | | | | |
| | | 기 타 | | | | | | |
| | 이전재원 | 소 계 | | | | | | |
| | | 국비보조금 | | | |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세 출 합 계 (II) | | | | | | | | |
| 경 상 경 비 (A) | 행정운영 경비 | 인력운영비 |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재무활동 | 내부거래 지출 | | | | | | |
| | | 보전지출 | | | | | | |
| 세 출 | 기 추 진 사 업 (B) |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 | | | | | |
| | | 지방비 부담액 | | | | | | |
| | 자체사업 | 사업재원 | | | | | | |
| | | 법정경비 | | | | | | |
| 신 규 사 업 (C) | 보조사업 |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 | | | | | |
| | | 지방비 부담액 | | | | | | |
| | 자체사업 | | | | | | | |
| 신규가용재원 = (I)-((A)+(B)+①) | | | | | | | | |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 1]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 ~ 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 2]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 3]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4] 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 5] 신규가용재원은 세입(I)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 | | | | | | | | | |
|---------------|---|-----------------------|----------------------|-------------------|----------------------------|--------------|-------------------------------|----|----------|----------|
| 사업명 | (신명조14, 진하계, 가운데 정렬) (회계, []) ³⁾ | | 분류 | 분 야 ⁴⁾ | 부 문 | | | | | |
| 담당자 |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 | | | | | | |
| 관련기관 |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 | | | | | | | | |
| 기본 현황 ☆ | 전체인구 | 일반회계 예산규모 | 당해연도 가용재원 | 재무 현황 및 비율 | 동 사업 수지전망 ⁵⁾ | 동 사업 수혜주민 | 동 사업 고용효과 (명) | | | |
| | 천명 | 억원 * 당초예산 | 억원 | 억원(%) | 억원 | 명 | 구분 | 합계 | 사업추 진 | 향후 운영 |
| | 사업확정 절차 | | 중기반영여부 | |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 | 국비재원 | | | |
| | 공모확정 (‘00. . .) | 사업계획 수립 (‘00. .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 |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 | 국비, 국비 부처지특, 국비 사도지특, 기금 등 | | | |
| |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 | | | | | | | | |
| | 타당성조사중(), 타당성조사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완료() | | | | | | | | | |

1. 면제 요구 근거 (HY헤드라인M 16)

- (신명조14) ※위원회 정보 등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11호 관련 사항
-

2.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6)

2-1.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계)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2-2.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3.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2-4. 사업위치⁶⁾ : (신명조14)

3)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4)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5)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6)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2-5.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년 개월)

2-6. 사업량⁷⁾ ※구체적으로 기재

◦ (신명조14)

2-7.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 계 | 기투자 (실집행) | Y (확보액) | Y+1 (확보액) | Y+2 (확보액) | Y+3이후 (확보액) |
|--------|---------|--------------|------------|--------------|--------------|----------------|
| 계 | (신명조13) | 100(70) | 200(100) | | | |
| 국 비 | | () | () | | | |
| 시 도 비 |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2-8.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현 단계까지 기술)

◦ (신명조14)

-
-
-

2-9. 기대효과

◦ (신명조14)

-

7)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3. 사업비 산출내역 (HY헤드라인M 16)

(단위 ; 억원)

| 구 분 | 산 출 기 초 | 금 액 | 비 고 |
|-----|---------|-----|-----|
| 총 계 | | | |
| 공사비 | 소계 | | |
| | (신명조13) | | |
| 보상비 | 소계 | | |
| | | | |
| 용역비 | 소계 | | |
| | | | |
| ... | 소계 | | |
| | | | |
| 기타 | 소계 | | |
| | | | |

-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 (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4. 향후 추진계획 (HY헤드라인M 16)

- (신명조14)
-

사업성 검토 결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진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되, 아래 기술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세부내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계)

- (신명조14)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사업 계획(위치,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 사업대상 부지 현황(토지이용용도, 면적, 소유주 정보 등)
- 사업 유형 및 사업 내용
- 사업추진 기간(건설 및 운영기간)

○ 총사업비(투자비) 및 운영비

- 총사업비 세부 내역(가격산정 기준시점 명기)
- 총투자비 세부 내역(물가상승률 등 주요 가정 명기)
- 운영비 세부내역(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소요자금, 재원조달 계획 등(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등 구분 제시)
- 금융구조(투자비율 등)
- 출자자 구성, 출자자의 재무능력(출자 여력 및 신용등급 등)
- PF 차입금 구성별 대출조건(금리, 수수료, 기간, 대출방식, 상환방식, 상환스케줄 등)

○ **수입 추정 결과**

- 시장분석 등 관련 산업 동향 검토
- 수입 항목별 추정결과 및 산출 근거

○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 등)**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무적 타당성(수익성)**

- 재무성 분석의 주요 가정
- 불변(경상) 현금흐름 추정 결과(원리금 상환 계획 포함)
- 사업수익률(사업수행 주체별 수익률 별도 제시) 등 재무성 분석 결과

○ **사업 위험(Risk) 분석**

- 건설 및 운영 관련 위험
- 운영수입 관련 위험

VI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8. 4.]</p> <p>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1. 8. 4.]</p> <p>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전문개정 2014. 5. 28.]</p> | <p>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2020.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p> <p>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5. 28.> ③ 삭제<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p> <p>제8조 삭제</p> <p>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p> | <p>[본조신설 2014. 11. 28.]</p> <p>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p> <p>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p> <p>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p> <p>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p> |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령”으로 각각 본다.</p> <p>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 5. 28., 2015. 5.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p> | <p>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같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9조 삭제</p> <p>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1. 28.></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p> <p>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p> <p>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 4.] [법률 제13283호(2015. 5. 13.)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p> <p>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p> | <p>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p> <p>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p> <p>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p> <p>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p> <p>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0. 4. 28.></p> <p>④ 삭제<2020. 4. 28.></p> <p>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28.></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 5. 28.]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4.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4.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0. 4. 28., 2021. 12.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0. 4. 28.></p> <p>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4. 28.></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4. 28.></p> <p>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8. 4.]</p> | <p>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p> <p>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p> <p>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p> | <p>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p> <p>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p> <p>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p> <p>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p> <p>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p> <p>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p> | <p>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p>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p>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p> <p>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경우를</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p> <p>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p>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p> | <p>제23조(이권 흡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흡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흡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흡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p> <p>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p> <p>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p> <p>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p>③ 삭제<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p> <p>제17조의2 삭제</p> <p>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p> | <p>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p> <p>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삭제<2011. 9. 6.></p> <p>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p> <p>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9. 26.></p> <p>제30조의2 삭제 제30조의3 삭제 제30조의4 삭제</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p> <p>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28.></p> <p>[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p> <p>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p> | <p>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가 전액을 부담한다.</p> <p>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 <p>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p> | <p>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p> <p>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용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4. 28.></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p> | <p>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 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p> <p>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p> <p>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p> <p>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p> <p>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p> | <p>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 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 9.></p> <p>② 삭제 <2014. 1. 17.></p> <p>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2024. 1. 9.></p> <p>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다.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p> <p>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관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p> <p>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p> <p>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p> <p>마. 제60조의 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p> <p>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p> <p>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p> <p>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 <p>회·전국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2024. 1. 9.></p> <p>[전문개정 2012. 1. 31.] [제목개정 2024. 1. 9.]</p> <p>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 9.></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9.></p> <p>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p>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p> <p>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5. 10. 6., 2017. 7. 26., 2024. 1. 9.></p> <p>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p> <p>[전문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24. 1. 9.]</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017. 7. 26.)</p> <p>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29., 2023. 8. 16.> [본조신설 2011. 8. 4.]</p> | <p>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 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p>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p> | <p>사항을 검토한다.</p> <p>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p> <p>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p> <p>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p> <p>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p> <p>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p> <p>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7. 7. 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7. 16.]</p> <p>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p> | <p>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7.]</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p> <p>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 <p>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8.></p> <p>1. <u>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u> 가. 시·도: 30억원 나. 시·군 및 자치구: 10억원</p> <p>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6. 28., 2017. 7. 26.></p> <p>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p> <p>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담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중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 <p>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0. 3. 3., 2021. 12.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4.]</p> <p>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 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 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p> <p>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p> | <p>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6., 2017. 7. 26., 2020. 3. 3.></p> <p>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 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p> <p>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0. 3. 3.></p> <p>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2020. 3. 3.>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액</p> <p>[본조신설 2012. 1. 31.]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 11. 28.>]</p> <p>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 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 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8.></p> <p>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 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 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p> <p>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p> <p>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 2. 20.></p> <p>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p> <p>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p> | <p>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p> <p>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개정 2014. 11. 28., 2016. 8. 29.></p> <p>④ 삭제<2016. 8. 29.></p> <p>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11. 28., 2016. 8. 29.></p> <p>[제목개정 2014. 11. 28.]</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p> <p>[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법률 제18546호(2021. 12. 7.)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p> <p>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p> <p>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p> | <p>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0. 3. 3., 2020. 12. 31., 2021. 12. 31.></p> <p>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p> <p>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p> <p>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p> <p>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 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차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2024. 2. 20.> [본조신설 2014. 5. 28.]</p> <p>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3. 4. 11.]</p> | <p>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p> <p>제37조 삭제 제37조의2 삭제 제37조의3 삭제 제37조의4 삭제 제37조의5 삭제 제37조의6 삭제 제37조의7 삭제</p> <p>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30조 삭제</p> <p>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장의2 삭제</p> <p>제32조의2 삭제</p> <p>제32조의3 삭제</p> | <p>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32조의4 삭제 제32조의5 삭제 제32조의6 삭제 제32조의7 삭제 제32조의8 삭제 제32조의9 삭제 제32조의10 삭제 제32조의11 삭제</p> <p>제3장 예산</p> <p>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 <p>제3장 예산</p> <p>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9.]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4. 11. 28.]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8.></p> <p>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5. 28.></p> <p>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5. 28.></p> <p>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p> <p>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p> | <p>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p> <p>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재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p> <p>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p> | <p>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p> <p>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認知 豫算書)라 한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p> <p>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p> <p>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p>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6.]</p> <p>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1.]</p> <p>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9., 2014. 11. 28., 2017. 12. 29., 2024. 3.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시·군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목개정 2024. 3. 11.] 제3조 삭제 <2024. 3. 11.>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 <p>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4. 1. 9.>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41조의2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div>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중 받기반정리사업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사업 1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사업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16.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사업</p> <p>17.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p> <p>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p> <p>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p> <p>2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p> <p>21.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p> <p>2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p> <p>23.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p> <p>2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p>25.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p> <p>2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p> | <p>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 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8. 14., 2017. 12. 29., 2024. 3. 11.></p> <p>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4., 2010. 12. 31., 2014. 11. 28., 2016. 3. 30.,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p>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11.></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1.></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3. 11.></p> <p>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 3. 11.></p> <p>⑧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3. 11.></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11.></p> <p>[본조신설 2017. 12. 29.]</p> <p>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4. 3. 11.]</p> <p>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2017. 7. 26., 2024. 3. 11.></p> <p>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p> <p>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p> <p>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p> <p>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1.></p> <p>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p> <p>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p> <p>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재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p> <p>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p> <p>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2024. 3. 11.></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불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frac{20}{100} + 150\text{억원}$ </div>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 |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p> |
|---|---|--|
| | | <p>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p> <p>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1. 28.]</p> <p>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p>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 3. 14.></p> <p>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4. 3.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1.>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37조의2(타당성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 <p>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 |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1.></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2017. 7. 26., 2024. 3. 11.></p> <p>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2017. 7. 26., 2017. 12. 29., 2024. 3. 11.></p> <p>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p>[본조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24. 3. 11.]</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p> <p>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p> <p>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p> <p>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p> <p>③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 <p>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p> <p>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p> | <p>[중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1. 28.>]</p> <p>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p> <p>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p>[본조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24. 3. 11.]</p> <p>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4. 3. 11.></p> <p>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p> |
|---|---|--|
| | | <p>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p> <p>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2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p> <p>[전문개정 2015. 12. 24.] [제목개정 2024. 3. 11.]</p> <p>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4. 3. 11.]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불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frac{20}{100} + 150\text{억원}$ </div>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에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 | <p> 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p> <p>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4. 3. 11.> [제10조에서 이동 <2014. 11. 28.>] </p>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p> | <p>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p> <p>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p> | <p>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p> <p>2. 투자심사 결과</p> <p>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p> <p>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p> <p>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p> <p>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p> <p>제43조 삭제</p> <p>제44조 삭제</p> <p>제45조 삭제</p> <p>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p> <p>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8. 3. 27.></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p> <p>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8. 3. 27.></p> <p>[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p> | <p>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 3. 3.></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3.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3. 3.></p> <p>[제목개정 2020. 3. 3.]</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p> <p>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 <p>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28., 2020. 3. 3., 2021. 1. 5., 2021. 12. 31.></p> <p>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 12. 31., 2021. 1. 5.></p> <p>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p> <p>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p> <p>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p> <p>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p> | <p>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p> <p>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4. 5. 28.></p> | <p>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p>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p> <p>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p> <p>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p> <p>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p> <p>8. 지방세지출현황</p>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p> <p>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 | <p>[본조신설 2014. 11. 28.]</p> <p>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4. 11. 28.]</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p> <p>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p> <p>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p> <p>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p> <p>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p> | <p>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 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 <p>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p> <p>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p>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p> <p>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p> | <p>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p> <p>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8.]</p> <p>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p> | <p>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p> <p>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8.]</p> <p>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신설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p> <p>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0. 6. 9.></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 <p>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2011. 9. 6., 2012. 2. 29., 2014. 3.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p>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p> <p>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p> <p>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p> <p>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p> <p>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p> <p>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8. 4.]</p> | <p>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u>재난복구사업에</u> 소요되는 경비 <p>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u>재난복구사업에</u> 소요되는 경비 <p>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5. 12.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4장 결산</p> <p>제51조 삭제</p> <p>제51조의2 삭제</p> <p>제52조 삭제</p> <p>제53조 삭제</p> <p>제53조의2 삭제</p> <p>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53조의3 삭제</p> <p>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p> | <p>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p> <p>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p> <p>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p> <p>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15. 12. 4.></p> <p>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p> <p>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p> <p>제4장 결산</p> <p>제59조 삭제</p> <p>제59조의2 삭제</p> <p>제59조의3 삭제</p> <p>제60조 삭제</p> <p>제61조 삭제</p> <p>제62조 삭제</p> <p>제62조의2 삭제</p> <p>제62조의3 삭제</p> <p>제63조 삭제</p> <p>제63조의2 삭제</p> <p>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p> |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증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 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p>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2023. 8. 16.></p> <p>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p> <p>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p> |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p> <p>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p> <p>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용자를 합한 금액</p> <p>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p> <p>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합계액</p> <p>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p> <p>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p> <p>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p> <p>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 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p> <p>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p> <p>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2. 31.]</p> <p>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3. 8. 16.></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p> | <p>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p><전문개정 2018. 12. 31.></p> <p>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p> | <p>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 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중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18. 12. 31.>]</p> <p>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p> <p>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p> | <p>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31.></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p> <p>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p> <p>[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8. 12. 31.>]</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p> <p>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p> <p>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 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8. 3. 27., 2023. 8. 16.>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p> <p>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p> | <p>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8.]</p> <p>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1. 3. 8.]</p> <p>제56조 삭제 <2023. 8. 16.></p> <p>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p> <p>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p> | <p>[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4에서 이동 <2018. 12. 31.>]</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p> <p>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p> | <p>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p> <p>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p>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 11. 28.> ④ 삭제<2014. 1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p> <p>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신설 2022. 11. 15., 2023. 4. 11.></p> <p>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p> |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2017. 7. 26., 2022. 11. 15.)</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3., 2022. 11. 15.></p> <p>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3.,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p> <p>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본조신설 2014. 5. 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p>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8. 16.></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p> | <p>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 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3. 8. 1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8. 16.></p> <p>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 <p>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p> <p>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7. 7. 26.></p> <p>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p> | <p>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p> <p>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 <p>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p>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p> <p>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9.]</p> | <p>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 6. 28.]</p> <p>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p> <p>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p> <p>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6. 5. 29.></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p> | <p>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 6. 28.]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수입</p> <p>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지출</p> <p>제67조 삭제</p>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삭제</p> <p>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제84조 삭제 제84조의2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지출</p> <p>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p> <p>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p> |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1. 28.></p> <p>제86조 삭제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89조의2 삭제 제90조 삭제 제90조의2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삭제</p> <p>제102조 삭제 제103조 삭제 제103조의2 삭제 제104조 삭제</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81조 삭제</p> <p>제9장 시효</p> <p>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p>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p> <p>제10장 채권의 관리</p> <p>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개정 2014. 5. 28.></p> <p>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p> | <p>제105조 삭제</p> <p>제106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채권과 채무</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p> <p>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p> <p>제10장의2 부채의 관리</p> <p>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p> | <p>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p>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8.] [중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 5. 28.>]</p> | <p>6. 장기예수보증금</p> <p>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p> <p>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 11. 28.]</p> <p>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위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p>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p> <p>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p> <p>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p> <p>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을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p>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는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는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여야 한다.</p> <p>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p> <p>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p> <p>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p> <p>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p> <p>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p> <p>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p>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p> <p>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 11. 15.></p> <p>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을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p> <p>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p> <p>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 <p>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p>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가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p> | <p>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p>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 28.>]</p> <p>제11장 복권</p> <p>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p> <p>제89조 삭제</p> | <p>제10장 삭제</p> <p>제134조 삭제</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90조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p> <p>제13장 보칙</p> <p>제96조 삭제</p> <p>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p> <p>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 <p>제135조 삭제 제136조 삭제 제137조 삭제 제138조 삭제 제139조 삭제</p> <p>제11장 보칙</p> <p>제140조 삭제</p> <p>제141조 삭제 제142조 삭제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 삭제</p> <p>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p>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
| <p>제14장 벌칙</p> <p>제97조 삭제</p> <p>제98조 삭제</p> | <p>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중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 11. 28.>]</p> <p>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2016. 11. 29.> 2. 삭제<2016. 11. 29.> 3. 삭제<2016. 11. 29.> 4. 삭제<2016. 11. 29.> 5. 삭제<2016. 11. 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p>② 삭제<2016. 11. 29.> [본조신설 2014. 8. 6.] [제146조에서 이동 <2014. 11. 28.>]</p> | |